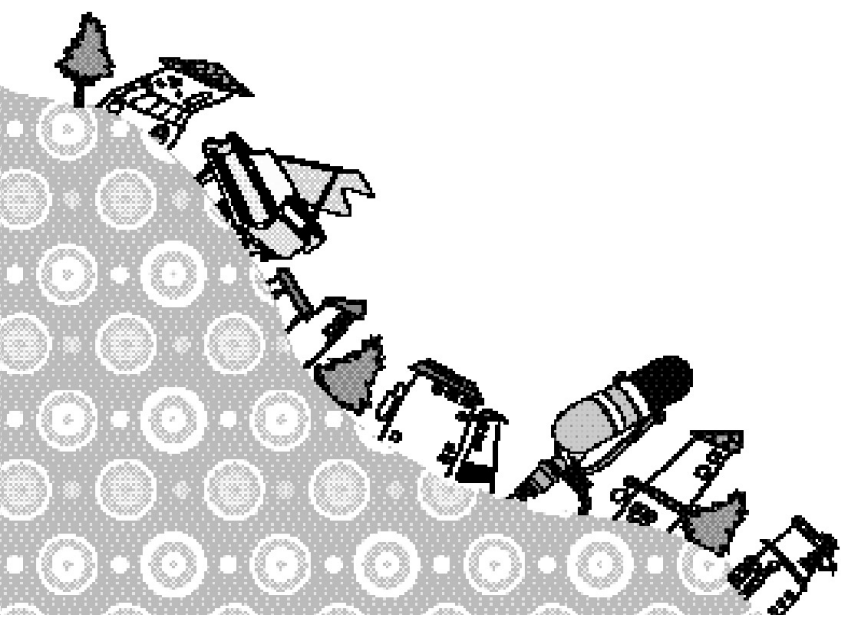


장애인 문화정책 비전

2010 장애인 문화·체육·관광정책을 말한다

2010. 5. 13(목) 14:00~16:20
올림픽컨벤션센터 무궁화홀

0000 000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2010 장애인문화정책 비전을 위한 행사 일정표

시 간	행 사	비 고
13:30-14:00	등 록	참가자 안내
14:00-14:30	예술무대(식전행사) - 사회(방귀희 KBS 작가)	장애청소년 국악팀 '땀띠' 한빛예술단 '바리톤 김정준' 장애인중창단 '희망새'
14:30-14:31	개 회	사회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4:31~14:34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14:34-14:40	인 사 말(2)	윤석용(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갑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14:40-14:55	환영사 및 정책소개	장관님
14:55-15:00	영상물 상영 - 장애인현장활동 중심	빔프로젝트
15:00-15:10	휴 식	
15:10:-16:10	토 론 - 사회 :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장애인문화예술> - 발 언(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 토 론(방귀희 장애인문화진흥회 회장, KBS 방송작가) <장애인체육> - 발 언(한민규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 토 론(김임연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선수위원장) <장애인 관광> - 발 언(이 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토 론(배용호 장애물없는세상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16:10-16:30	종합토론	
16:30	폐 회	사회자

Content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 :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5
김세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장애인문화예술의 실태와 과제	15
방귀희(장애인문화진흥회 회장, KBS 방송작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참여 확대방안	31
한민규(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	43
김임연(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선수위원장)	
한국 장애인관광의 현황과 발전방향	49
이 훈(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장애인관광과 여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95
배용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문화 · 예술활동과 장애인 :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김세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 :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김세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1. 들어가는 글¹⁾

최근 들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장애인관련 법률 조항들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체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한 이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책영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설치됨으로써 민간 영역의 관심 증가와 정부영역의 지원체계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또는 문화예술영역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과 문화예술영역이 여전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과 문화예술영역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도 위에서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장애인과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문화예술활동의 관계가 소원할 것이라는 가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미술영역에서 조각화가들의 활동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95년에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문학영역에서는 1990년 12월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창립되고 1991년 장애인문학을 표방하는 「솟대문학」을 창간

1) 이 원고는 2008년 장애인미술협회에서 주최한 세미나 원고를 중심으로 다른 세미나 등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들을 발췌,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무용영역에서 휠체어 댄스라고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연극 활동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들이 문화예술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영역과 장애인의 활동은 단순히 일회적 체험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을 넘어 보다 일반인의 예술활동과 같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원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여러 조사들이 진행된 바 있다.²⁾ 이러한 많은 조사와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매우 미흡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도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장애인과 일반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나 참여의향에 대한 비교는 그 격차가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1〉 문화 활동을 격차

구 분		일반인(2006)	장애인(2007)	격차	
문화활동	예술관람	65.8	18.1	47.7	
	문화시설 이용	41.9	22.9	19.0	
	문화관광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51.4	17.7	33.7
		지역축제 참여	43.0	20.9	22.1
	문화예술교육	7.7	2.3	5.4	
	동호회 활동	3.3	1.9	1.4	

※ 윤상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장애인문화예술진흥전진대회자료집, 2008.5. 50쪽.

〈표 2〉 문화활동참여 의향률(수요) 격차

구분		일반인(2006)	장애인(2007)	격차	
문화활동	예술관람	73.8	38.0	35.8	
	문화시설 이용	54.9	32.5	22.4	
	문화관광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79.9	45.1	34.8
		지역축제 참여	19.6	45.8	25.6
	문화예술교육	19.6	13.7	5.9	
	동호회 활동	14.8	11.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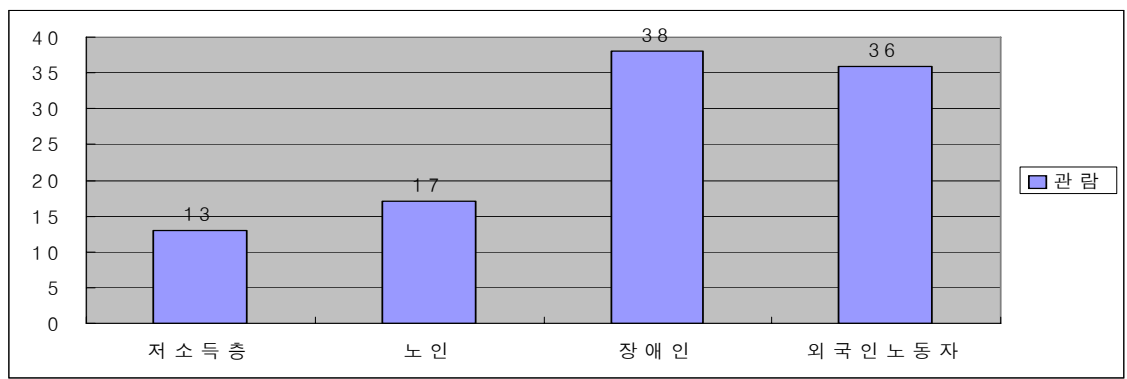
※ 윤상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장애인문화예술진흥전진대회자료집, 2008.5. 50쪽.

2) 주요한 조사, 연구보고서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문화욕구와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2001),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2005), 한국장애인협회 「장애문인 창작활동 실태조사」(2005),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7),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2005), 「장애인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2004), 손봉숙 의원실 「장애문화예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2006.10) 등이 있다.

문화활동 참여율이나 향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이러한 격차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향후 일반인과 장애인간의 문화활동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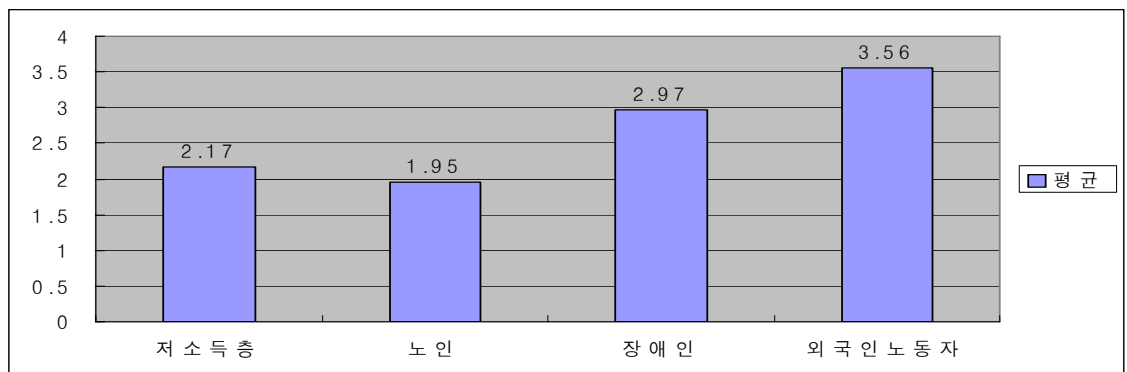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서는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³⁾ 예컨대,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장애인은 가장 많이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문화예술활동 참여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문화예술활동 관람율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2005).

〈그림 2〉 창작 활동에 대한 관심도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2005).

이처럼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교해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는 낮지만 유사한 취약계층 내에서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활동 관심도와 참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문화예술활동 참여의사 : 장애인(60%), 저소득층(51%), 노인(43%), 「사회적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05년)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

장애인 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징과 동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이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 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왔다. 이러한 방향은 장애인 계층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향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관람활동에 장애가 많다는 점에 주목,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채택된 것이다.

향수기회, 그 가운데에서도 관람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문화영역에 대한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욕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기회의 제공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에는 장애인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절반만을 달성하는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관람만으로는 문화적 감수성이나 창의력이 계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 역량 강화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곧, 장애인 계층을 위한 문화향수기회 확대 정책은 일정 부분 이들로 하여금 문화활동을 접하고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계층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공급적 측면과 상호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은 주로 순수예술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 장애인 계층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주로 순수 혹은 고급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순수문화예술 활동에 접할 기회가 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문화소외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낮선’ 프로그램들이기도 하다.

지역에서의 문화예술향유 만족도와 관련되어서는 ‘이해하기 쉬운’ 행사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이 나타난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그러한 활동에 노출된 경험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계층의 경우 순수예술 혹은 고급문화예술에 대한 친근감이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보다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은 보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고급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기회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상과 실생활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문화활동까지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은 고급 혹은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이외에도 이들 자체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추가적으로 설

4)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실시되는 예술행사 관람을 조사는 문학, 미술, 클래식음악/오페라, 전통예술공연, 연극, 무용, 영화, 대중가요콘서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순수예술중심이고 영화와 대중가요콘서트가 대중문화에 속한다.

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법론의 취약성이다. 장애인 계층 지원 정책은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만큼이나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곧, 장애인 계층에게 정책이 목표하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은 정책의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지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심리적, 행태적, 관계적 측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기반하여 어떠한 관계망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공연이나 전시 자체를 관람하게 하는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지원 정책은 상당 부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방법들이 개발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취약성은 타 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이외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타 기관들과의 취약한 협력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의 문제가 정책적으로 더욱 고민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⁵⁾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시민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장애인계층 내부에서의 접근 등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 계층이 문화예술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영역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의 대부분은 시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고려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의 접근성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관조차 장애인의 접근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의 여건은 더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시설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등에서의 접근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우며, 청각 장애인의 경우 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다

5)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05) 과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전진대회(2008.5)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에 접할 수 있도록 시설, 프로그램, 정보 등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문화정책은 무엇보다 이들이 문화생활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작자로서의 장애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은 주로 공연 및 전시 관람의 편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재할, 자활 의지를 북돋우며 이들이 동등한 문화생산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문화창작 여건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립 장애인예술단에 대한 사례는 창작자로서의 장애인을 이야기할 때 심심치 않게 지적되는 사례이다. 장애인은 단순히 관람자로서의 욕구 뿐만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욕구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으로서 창작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전문예술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삶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전문적인 예술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를 사회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장애인의 경우, 문화수용력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활동에의 접근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긍정적 정체성 확립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활동은 다른 영역과 달리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보다 체험한 사람에게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따라서 장애인 계층 또한 비록 현 단계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취약하다고 해서 이러한 활동을 진흥시킬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교육기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다양한 기자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장애의 경우, 신체적 장애를 보완해주면서 미술이나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나 악기들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인과 동일한 기자재를 가지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는 더욱 어렵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의 경우,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완해주는 기자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 계층이 문화예술활동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는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장애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가 ‘장애를 더욱 장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장애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비록 장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하여 장애와 유사한 신체적 기능을 나타내는 노년 계층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노년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를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노력이 아무리 활발하다고 할지라도 활동의 주체인 장애인 계층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나 참여, 환경 개선 노력이 없으면 이 과제는 매우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장애인 계층 자체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장애인 계층 내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입증하여야 한다. 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률로 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법률의 적용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지 않고는 그 실행력이 보장될 수 없다. 공공정책은 당위성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특정 정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이며, 한정된 자원을 이러한 분야에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활동 영역이 얼마나 ‘긴급’하고 ‘핵심’적인지가 여러 분야에서 입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혹 장애인의 문화활동이 ‘긴급’하고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광범위한 공감대나 지지가 없으면 이 정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 수요를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기술 및 인력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 등은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준비는 현 단계부터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 향후에는 정책영역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들로서 이에 대해 장애인 계층 내부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라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조사,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적 활동 및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화권은 단순히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가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사회와의 의사소통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보다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주장은 그 추진력을 담보하기에 매우 취약한 기반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내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제고를 위한 공공영역의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공공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그 인식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정책영역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제고를 위해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을 통하여 제기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과의 적합성 등을 따져 장애인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장애인계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곧,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애인문화예술의 실태와 과제

방귀희(장애인문화진흥회 회장, KBS 방송작가)

장애인문화예술의 실태와 과제

방귀희(장애인문화진흥회 회장, KBS 방송작가)

1. 들어가며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예산의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59건의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장애인문화예술 부분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2009년도 장애인체육예산은 365억원인데 반해 장애인문화예술예산은 62억2천7백만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소외계층예산 310억7천만원에 비해도 5분의 1에 불과하다. 소외계층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대1인 것을 생각하면 자기 몫도 찾지 못한 것이 된다.

장애인문화예술 체육을 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에서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인데 반해 문화예술은 단 2명이다.

장애인 체육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은 아직 안정 장치가 없어서 구심점 없이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장애인문화예술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장애인문화예술을 발전시켜주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장애인문화예술의 유형

1) 장애인문학

아직도 장애인문학에 대한 용어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숏대문학에 실린 글을 통해 정리를 해보는 수준으로 장애인 문학을 나름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시인 김홍열은 '장애인문학의 위상과 발전방향'(숏대문학 창간호)을 통해 장애인문학을 이렇게 정리했다.

도대체 '장애인문학'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어떤 문학을 ‘장애인문학’이라고 하는가. 그런 문학도 있는가.

있다면 ‘장애인문학’은 언제부터 있어 왔으며, 그 내용과 이론의 체계는 어떠한가.

위의 물음들에 답하기 전에 우선 ‘장애인문학’이라고 구분지어 말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여류 시인, 여류 소설가라고 불리우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여자 작가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기 때문이다. 작가면 작가이지 성별이 여자라서 여류 작가, 문학이면 문학이지 여자가 쓴 문학이라고 해서 여류 문학이라고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류 작가들의 말에 동의한다.

‘장애인문학’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썼기 때문에 ‘장애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여류 문학과 같은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문학’이란 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문학 활동과 장애를 소재나 주제로 한 문학을 가리킨다.

‘장애인문학’이란 것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1990년 12월 7일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이고 1991년 봄 ‘장애인문학’을 표방한 솟대문학이 창간되면서 ‘장애인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현재 솟대문학은 통권75호까지 발간됐고 솟대문학을 통해 활동하는 장애인인은 800여 명에 이른다.

2) 장애인미술

장애인미술을 정의하는 것은 장애인문학보다는 수월하다. 미술 작품의 주제를 장애인으로 하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미술을 장애를 가진 미술인들의 작품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그림을 손이 아닌 다른 신체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에 따라 구필화가나 족필화가로 구분이 된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 구필, 발가락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면 족필이 되는 것이다.

구필이나 족필을 통틀어 ‘구족화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2명의 구족 화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미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농미회를 주축으로 청각장애인 화가들의 활동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화의 거장 윤보 김기창 화백이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은 청각장애인 화가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에게 미술은 적합한 예술 분야라는 점도 작용했다.

장애인미술은 청미회, 수레바퀴, 붓사랑, 화사랑 등의 여러 모임이 장애유형별로 또는 작품

장르별로 소규모 활동을 해오다가 1995년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2009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원은 850여 명에 이른다.

3) 장애인음악

장애인음악은 장애인들의 음악활동이다. 청력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 연주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다.

정신지체인으로 구성된 더불어합창단(서울정신지체인복지관)이나 영혼의소리합창단(일산홀트복지타운), 사랑챔버연주단(온누리교회)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시각장애인챔버오케스트라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명창 최준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등 발달장애음악인들도 속속 탄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중 음악에서도 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있다. 목발을 사용하는 박마루, 인기 듀오 클론의 강원래는 휠체어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1970년대에 인기를 누리던 가수 이용복도 시각장애인이다.

이밖에 지체장애가 있는 테너 최승원은 세계적인 성악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고 네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음악은 개인적인 음악인 중심으로 활동을 펴고 있다.

4) 장애인공연

2003년 재단법인 한빛재단에서 시각장애인을 단원으로 하는 한빛예술단을 창단해서 각종 행사에 초대되는 등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 4월 클론의 강원래 씨가 끼가 있는 장애예능인들을 모아 꿈따리 유랑단을 창단해서 전국을 돌며 순회공연을 가지며 장애인 극단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해 kbs 장애인가요제 수상자들이 모여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을 창단해서 휠체어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

장애인 사물놀이 땀띠, 소리울림밴드(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5) 기타 장애인예술분야

최근 들어 장애인연극이 장애인계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장애인극단 휠과 장애 여성 공감의 연극팀 춤추는 허리에서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의 나눔 연극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런 장애인 연극을 통해 장애인 연극 배우들이 탄생했다.

그런데 장애인연극도 장애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소재로 일반극단에서 무대에 올린 연극 공연들이 또 하나의 장애인연극을 형성하고 있다.

장애인무용은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강진희나 휠체어 댄서 김용우의 활동으로 대표될 수 있고 다운증후군 강민휘가 영화 <사랑해 말속씨>에 등장해서 열연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장애인문화예술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단체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 방귀희 회장
- 사단법인 에이블아트 장병용 이사장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회장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
- 사단법인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홍이석 회장
-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변승일 회장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 류시문 총재(황재환 단장)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 이철용 회장
- 사단법인 열린세상국민문화운동본부 이일세 회장
- 사단법인 빛소리 친구들 우광혁 회장
-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열 이사장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엄정순 회장
- 재단법인 한빛재단 한빛예술단 김양수 단장

□ 비법인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연대 최현숙 대표
- 한국장애인음악협회 송형익 회장
-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배은주 대표
- 한국장애인서예협회 탁정호 회장
- 장애인문예지 '솟대문학' 방귀희 발행인
- 장애인중창단 '희망새' 안성빈 단장
- 장애인사물놀이 '땀띠'
- 장애인 노래패 '시선'

- 상록수 류경애 회장
-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송정아 단장
- 청각장애인공연단 '비버DEAF예술단' 김영민 단장
-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
- 장애인 연극교실 극단 애인 김지수 대표
- 장애인극단 판 좌동엽 대표
- 수화뮤지컬예술단 김현호 단장

□ 장애인문화예술사업 실시 단체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홍 원장;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미술대전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회장;장애인예술제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광환 회장;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
- 강남장애인복지관 박정근 관장;에이블아트 운동
- 서울뇌성마비복지관 이진명 관장;뇌성마비인들의 시낭송회, 밴드팀 밀키웨이
- 한국재활재단 이인용 이사장;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소리올림밴드
- 온누리교회 지적장애인 '사랑챔버연주단' 손인경 단장
- 하트하트재단 시각장애인 '하트시각장애인챔버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
- 홀트아동복지회;지적장애인 '영혼의 소리로' 박제웅 단장
- 파라다이스복지재단;청각장애인 '아이소리양상불합창단'
-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정진모 관장;열린문화마당
-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문화여가지원센터
- 사랑의복지관;지적장애인 '사랑의오케스트라'
-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지적장애인 '다함께 청소년 합창단'
- 온누리복지재단;서울지적장애인미술작품전
- 한국아르브뤼 김통원 대표
- 하트하트재단 신인숙 이사장;발달장애청소년 관현악단 하트하트윈드오케스트라
- 필로스장애인무용단 임인선 단장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실로암SONORE양상불, 실로암호산나중창단
- 서대문농아인복지관;청각장애인뮤지컬
-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인뮤지컬
- 한국생명의전화 해피워크;지적장애인 행복한 인형극단
- 함께사는세상 유찬호 대표;지적장애인 영화제작반
- 서울가톨릭장애인핸드벨연합회

3.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실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문학인과 미술인을 중심으로)의 창작 활동 현황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회적 평가

“우리나라 장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낮다’가 35.3%(126명)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소 낮다(24.9%), 그저 그렇다(27.5%)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81점으로 다소 낮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야별로는 미술이 3.84점, 문학이 3.78점으로 대체로 다소 낮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창작발표 기회

“창작발표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보는지” 질문하였을 때, ‘매우 부족하다’가 38.8%(138명)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소 부족하다(36.0%), 그저 그렇다(16.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발표 기회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03점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조사되었고, 분야별로는 문학이 4.07점, 미술이 3.99점으로 창작기회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화예술활동 지원

“장애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매우 부족하다’가 58.5%(207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소 부족하다(23.7%), 그저 그렇다(11.6%)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의 만족도 평균은 4.33점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야별로는 문학이 4.36점, 미술이 4.29점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장애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매우 낮다’가 65.6%(233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소 낮다(20.8%), 그저 그렇다(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47점으로 다소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야별로는 미술이 4.46점, 문학이 4.48점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다소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출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이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인터넷이 31.8%(114명) 였고, 다음으로는 주위의 동료/선후배(22.0%), 전문잡지(20.1%), 신문(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은 인터넷이 40.4%(76명)로 가장 높았고, 전문잡지(17.6%), 신문(14.9%) 순으로, 미술은 주위의 동료/선후배가 35.7%(61명), 전문잡지(22.8%), 인터넷(22.2%)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활동 관련 수입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을 살펴보면, 없음(69.3%), 10만원 이하(12.8%), 51~100만원(5.4%), 31~50만원(4.5%), 21~30만원(2.6%), 11~20만원(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은 없음(75.5%), 10만원 이하(14.7%), 31~50만원(3.3%) 순으로 조사되었고, 미술은 없음(62.5%), 10만원 이하(10.7%), 51~100만원(10.1%)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소 만족한다’가 36.4%(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저그렇다(24.1%), 다소 불만이다(19.9%) 순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 평균은 2.86점으로 다소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의 경우 ‘다소 만족한다’가 28.4%(52명)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 평균은 3.09점, 미술의 경우 ‘다소 만족한다’가 45.0%(76명)로 가장 높았고, 만족도 평균은 2.62점으로 대체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활동의 어려움

“문화예술 활동의 어려움은 무엇이나” 를 묻는 질문에 1순위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가 55.0%(19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의 경우 1순위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가 45.1%(83명)로 가장 높았고, 미술의 경우 1순위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가 65.7%(11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활동의 문제점

1)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미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주로 빵 위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빵이라고 보고 장애인수당이나 세금 감면이나 각종 이용료 할인 혜택만이 장애인복지인 양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장애인단체들도 이익집단이라 다수의 장애인의 욕구를 우선 사업으로 했지 소수의 장애문화예술인에게 눈을 돌리지 못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과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은 장애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했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예술제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장애인근로자문화제 등은 아직 아마추어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작품을 공모하고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도 장애인정보화수기를 모집하고 있지만 예술성보다는 단체를 홍보하는 목적성이 더 크다. 장애인문화예술정책 없이 각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없다.

2) 장애인문화예술 교육 부재

장애인문화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기관이 없다. 몇몇 장애인복지관에서 미술, 음악, 문학 등을 배우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은 특수학교에서 배운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만큼 장애인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의 문학창작반이나 자생원의 문예창작반이 있어서 교육생들이 동인지들 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장애인 문학창작반은 자원봉사로 문학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만큼의 문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장애인문화예술 인식 부족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이 가장 높은 곳이 문화예술분야이다.

문화예술인들은 계보를 중요시 여기기에 학교나 활동 그룹에 소속되지 않으면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장애문화예술인들은 그 어느 곳에서 끼지 못하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장애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순수 예술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이름있는 화가 작품은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구입을 하지만 장애인 화가가 그린 그림은 사려고 하지 않는다. 유명한 예술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애문화예술인들은 비선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대중의 호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장애문화예술인 자신도 장애를 내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냥 문화예술인하기를 원하고 장애란 카테고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문화예술이란 분야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고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5.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보장 실현 방안

1)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006년 10월 <장애문화예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이란 정책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 보고서에서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의 2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2008.1.17 신설)

제15조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나 지원할 수 있다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독립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돼야 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 전문 단체가 필요하다

한국장애인문인협회나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있어서 그나마 장애인문인과 장애화가들은 구심점을 갖고 있다. 2005년에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문화예술 영역을 아우르기는 역부족이다.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모든 모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전문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는 장애문화예술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단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체육은 2005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전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3)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무엇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장애인이 원하는 일 가운데 문화예술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취업을 권하고 있다.

장애인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 보상이 우리나라 예술원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술활동비처럼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 지원금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장애인문화예술인을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열악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런 창작지원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게 해주고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줘야 한다.

장애인 선수들은 현재 200여명 명이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 액수는 최고 80만원인 것을 감안해 그에 준하는 장애인문화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이 책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6. 나오며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을 위해 다섯가지 제안을 한다.

▶ 주무부처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주로 다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문화는 언제나 시혜적 대상이며, 부차적인 권리로 치부되기 쉽다. 문화정책은 향유자와 생산자의 양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그 문화적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공공쿼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장애인문화예술예산의 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일정 비율 4.5%(전체 국민에서 장애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야 한다.
- 방송,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해 의무화한다.

▶ **아마추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무조건 아마추어로 본다. 이런 시각 때문에 사람들은 관람료를 내고 공연을 보러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열연하는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먼저 본다.

장애인문화예술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것에 공감해야 한다.

▶ **사회적공연(Social Entertainment)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적 공연 개념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테두리를 사회적으로 더 넓게 확산시켜 정책 마련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지개념이 아닌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장애문화예술의 사회적인 공헌과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적 공연은 문화예술의 순수한 사회공헌과 상업예술로서의 경제적 독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연이다. 자원봉사와 정부지원을 토대로 하는 자선공연이나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일자리 창출과는 개념을 조금 달리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공연은 사회서비스 기능과 문화예술인들의 직업 활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런 사회적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공연 인증이 필요하다.

▶ **장애인문화예술종합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

- “we play now” 우리는 지금 공연한다는 개념으로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언제라도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한다.
- 장애인문화예술 교육기관의 역할을 한다.
- 장애인문화예술 홍보관 역할을 한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장애인예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NADC(National Arts & Disability Center; UCLA)

-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예술인의 예술사회 진입을 지원
- 온라인 갤러리 운영, 장애예술가 작업실 위탁, 장애예술가 인적 네트워크지원 및 활동 컨설팅, 장애예술가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활동 지원
- 설립 및 운영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Project Ability(Glasgow-city, Scotland)

- Glasgow시에 위치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비주얼아트센터
- 장애인을 위한 예술 워크샵(ASPIRE WORKSHOP, Create Workshop, Connect Workshop)과 미술관을 운영
- 설립기금: Glasgow시, Scotland 일반회계
- 운영기금: Scotland 예술기금, NHS기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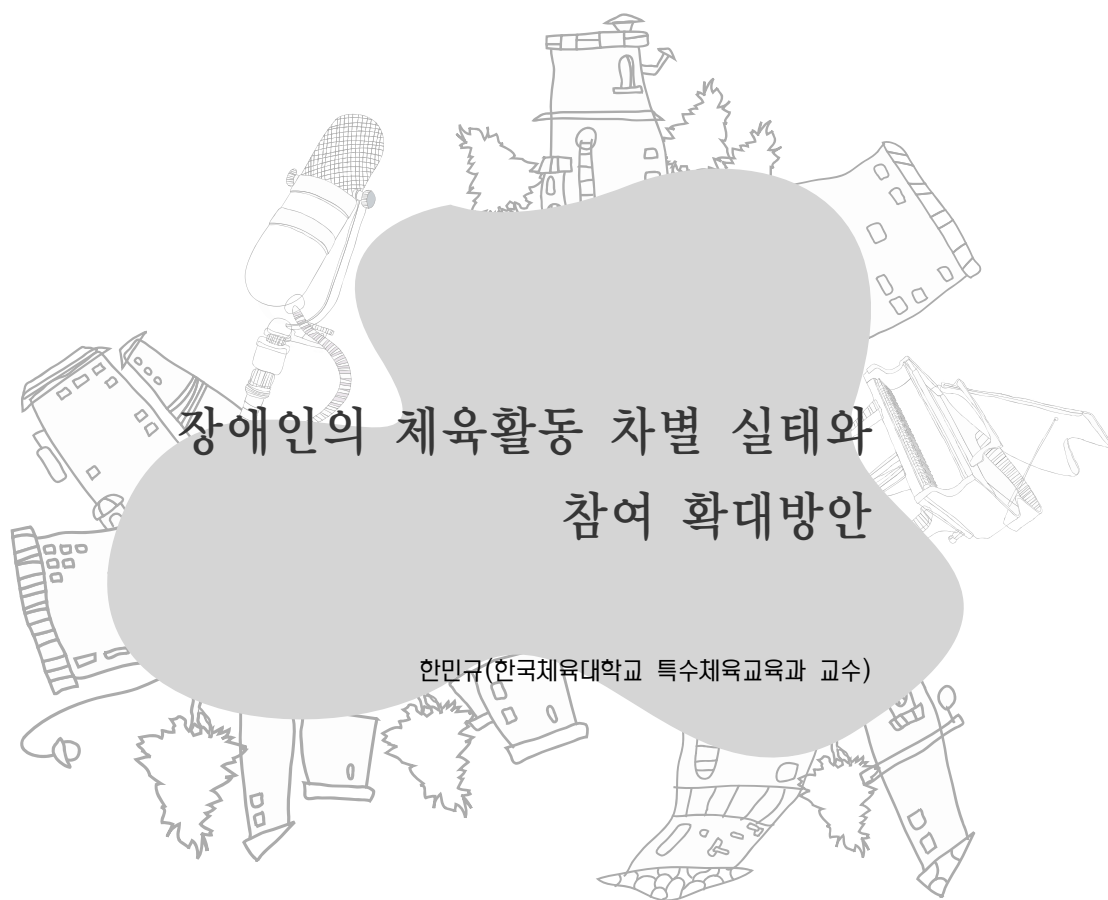
■ VSA(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Arts and Disability; Washington)

- 장애예술인의 교육 및 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미국내 40개 주별 VSA센터를 비롯한 전세계 60여개 지역센터를 운영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장소 및 전시, 전람, 교육 일체를 지원
- 설립 및 운영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각 주별 VSA센터는 해당 주 정부에서 지원

■ Big I Art(빅아이국제교류센터; 일본 오사카)

-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장애인교류센터(빅아이)는 베리어프리 아트아카데미,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전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인문화예술오픈컬리지 등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하는 Big I Art가 핵심사업임
- 더불어 Big I 박물관 운영
- 설립 및 운영기금: 후생노동성 일반회계

장애인문화예술종합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문화예술인이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참여 확대방안

한민규(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참여 확대방안

한민규(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I. 서론

최근 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과 장애 범주의 확대로 장애인 등록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224만명(보건복지부, 2008)을 넘어서는 총 인구대비 4.5%를 차지함으로써 유엔이 권고하는 전 국민의 10% 장애인 추산 인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1997년 대비 장애인 등록 인구가 5배 이상 증가한 통계로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선진국 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09년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은 7%로 나타났다. 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2005년부터의 참여율과 비교해 보면 2005년 3.3%, 2006년 4.4%, 2007년 5.4%, 2008년 6%에 비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34.2%(문화체육관광부, 2008)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데 반하여 장애인 대다수는 체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차별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체육현장에서의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유형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체육프로그램의 차별,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부재, 이동 및 접근권에 있어서의 차별, 체육대회 및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 학교체육에 있어서의 차별 등 체육 제반환경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를 사례별로 제시하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

체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2007).

1. 체육시설 이용의 차별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접근성이 개선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수단이나 시설에 접근 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사용 되어지는 용기구 역시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비치되어 있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지체장애인인 A씨는 자기 차량이 없어 인근에 있는 체육센터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운동하러 다니려고 하나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워 포기했다. 동네 여건상 버스나 지하철을 탈 엄두도 나지 않고 해서 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에도 문의하여 봤으나 멀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과 그곳에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용을 포기하게 되었다.
- 시각장애인인 B씨는 집 근처 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육센터 내의 이동을 위한 표지나 표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몇 명 안 되는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시설을 마련 할 수 없다고 이용을 거절당했고, 다른 체육시설 이용을 권유 받았다.
- 지체장애인인 C씨는 이용하고 있는 시체육센터가 늘 불편하다. 공공체육시설이라 편의증진법에 명시된 몇 가지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체육활동을 하기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세면대, 탈의실, 샤워실 등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센터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의무 편의시설도 갖추기가 어려운데 체육시설 내 이용에 관련된 권장 편의시설까지는 마련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 뇌성마비 학생의 부모인 D씨는 인근 구민체육센터 운동교실에 자녀를 보내고 있지만 속상한 일이 많다. 자식의 장애정도가 경해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장애인체육 용기구로 대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에 대한 용기구 보완을 요구했지만 회원으로 받아도 주었는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면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를 명문화해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11

일부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체육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ADA법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어떠한 개인도 공공 프로그램 참여나 서비스 향유에서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불평등도 강요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접근권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수단은 집 또는 직장에서 스포츠 센터로 이동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해야만 하며 또한 이를 위해 적절한 이동 기구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다(Depauw, 1995).

2. 체육지도자의 차별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활용은 재가 장애인들을 체육활동의 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자 필수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통 털어 봐도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지도자에 의한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일반체육 분야와는 달리 장애인체육 지도자는 관련된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부재하여 법률적 근거 하에서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A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상담을 했으나 센터 내에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강습을 해 줄 수 없다고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라고 안내를 해 줬지만 장애인체육시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강습을 포기했다.
- B수영장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강습을 해 줄 수 있냐고 강습을 거절했다.
-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C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은 밀려나고 일반인들 차지가 되고 있다. 장애인은 얼마 되지 않고 비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실망을 했다. 더구나 장애인 체육지도자는 수영장에 한해서만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비장애인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관련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지도자 배치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에서 당연히 지도받을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을 명시함으로써 체육지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3. 이용 프로그램의 차별

현재 많은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참여를 거부하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수영장이 더러워진다’, ‘사람이 다 찼다’라는 등 각종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고 있다.

- 대전시 소재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의 입장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장애아 전담 A어린이집 선생님이 장애아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사람이 다 찼다고 입장을 거부해 위에서 보았더니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왜 거짓말을 했냐는 질문에 체육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수영장에서 실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물을 교체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다른 체육관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변명을 했다.
- A수영장에서 등록을 거부하였다. 수영을 할 때 장애인이 속도를 못 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B수영장에서는 장애인에게 회원등록을 받으면 다른 일반회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고 부모들이 체육센터 지도자와 관리자에게 항의를 하여 장애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 수영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 지나며 오는 것을 꺼려하는 듯 한 어투로 계속 이야기해 주위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괴로웠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차별금지 조항으로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에서의 참여거부나 제한은 법 조항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관련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법률 시행령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III. 선진국의 장애인체육 관련 정부정책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학교와 스포츠클럽 등에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적 관심과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 따라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다. 여기에는 장애 종류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일반 스포츠클럽, 또는 특정한 장애인(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클럽 등이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들은 재활센터, 학교, 혹은 지역, 지방, 도시 등과 연계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1992년 유럽 체육장관회의에서 유럽 장애인 생활체육 헌장의 이름으로 여러 항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이 유럽 헌장은 1987년에 통과되었으나 그 기원은 세계장애인의해를 기념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 개발위원회(CDDS)가 연구 활동을 시작한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유럽 체육장관회의에서는 유럽과 각 국가의 장애인체육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6년 후에 유럽 헌장이 완성되었다. 유럽 헌장은 유럽 전역의 장애인을 포함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지만 그 채택된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나라별로 조금 다르다. 다음은 유럽 헌장의 주요 사항들이다(DePauw & Doll-Tepper, 1989).

- 장애인이란 특수 장비나 트레이닝을 통한 보조 없이는 대부분의 스포츠나 신체적인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킨다. 장애는 지적장애, 신체 또는 중복 장애, 만성 질환(당뇨, 천식, 심장 질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포함한다.
- 장애인체육이란 종합적 스포츠 활동이며, 최우수(엘리트)스포츠, 조직적 스포츠(클럽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체력단련이나 의학적 효과를 위한 건강 스포츠(장애인의 재활과 치료의 목적) 등으로 구분된다.
-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체육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높인다.
 - ③ 장애인은 경기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
 - ④ 장애인은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리학적, 사회적 이익을 얻는다.
- 정부는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각자의 선택에 따른 스포츠와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국 체육단체들, 공공기관 또는 국가 보조기관, 클럽 등은 스포츠에 관한 것이나, 정책 등을 결정할 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도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별폐지는 필수이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스포츠협회는 증가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① 코치와 트레이너를 양성한다.
 - ② 체육 행사를 공식화하고 후원한다.
 - ③ 장애인을 위한 대회를 개최한다.
 - ④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⑤ 일반인을 위한 경기대회에 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마련한다.
 - ⑥ 일반인과 장애인을 통합한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은 의사, 물리치료사, 전문치료사, 체육교사, 초등교사, 특수체육교사, 스포츠 행정가들의 협조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스포츠 참여에 필요한 기술적인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이 필요하다.
- 장애인체육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철저한 문헌 검색
 - ② 참여로 인한 이득
 - ③ 분류와 통합
 - ④ 코칭과 트레이닝
 - ⑤ 전문적인 준비
- 체육 지도자를 위한 트레이닝과 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장애와 손상에 대한 지식
 - ② 특정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 ③ 장애별로 알맞은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 ④ 장애인 신체활동에 대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관한 지식
 - ⑤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장애인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져야 한다.
 -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 ② 장애인을 새롭게 스포츠에 참여시키고
 - ③ 장애인선수가 일반 선수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 정부는 장애인이 일반 선수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영구적 질병, 만성 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IV.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방안

1.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공공체육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은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장애인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스포츠 권을 신장시키고 사회복지시설로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공공시설 본연의 목적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7).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접근성의 확보이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주차장 확보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전 자치단체가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법률 적용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보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장애인 이용우선 사용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내부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엄격히 하여 해당 기관에서 조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고,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내에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용기구나 시설들을 반드시 배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한민규, 2008).

2.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 및 배치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이 필수 선결과제이다. 장애인체육 지도는 그 특성상 일반 체육인이 쉽게 지도하기가 어려워 전문능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필요하나 이 또한 현 제도 내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이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국가 공인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행히 최근 들어 장애인체육지도자 공인자격제도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질 높은 체육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급수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연수 및 검정을 강화하고 자격자의 사회적·경제적 대우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자격증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장애인체육 현장에 배치되어 운영될 수 있는 양성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지원

리모델링을 통하여 확충된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들이 상주하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생활체육대회·행사 지원, 생활체육클럽·교실운영 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장애인체육 전공자를 체육지도자로 우선 배치하여 순회하며 지도하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와 타당하지도 않다. 현재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 생활체육 교실과 동호인클럽에 지도자와 운영 관리를 지원하여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교실, 동호인클럽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와 관계없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장애인 생활체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도 이어지는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이다.

4.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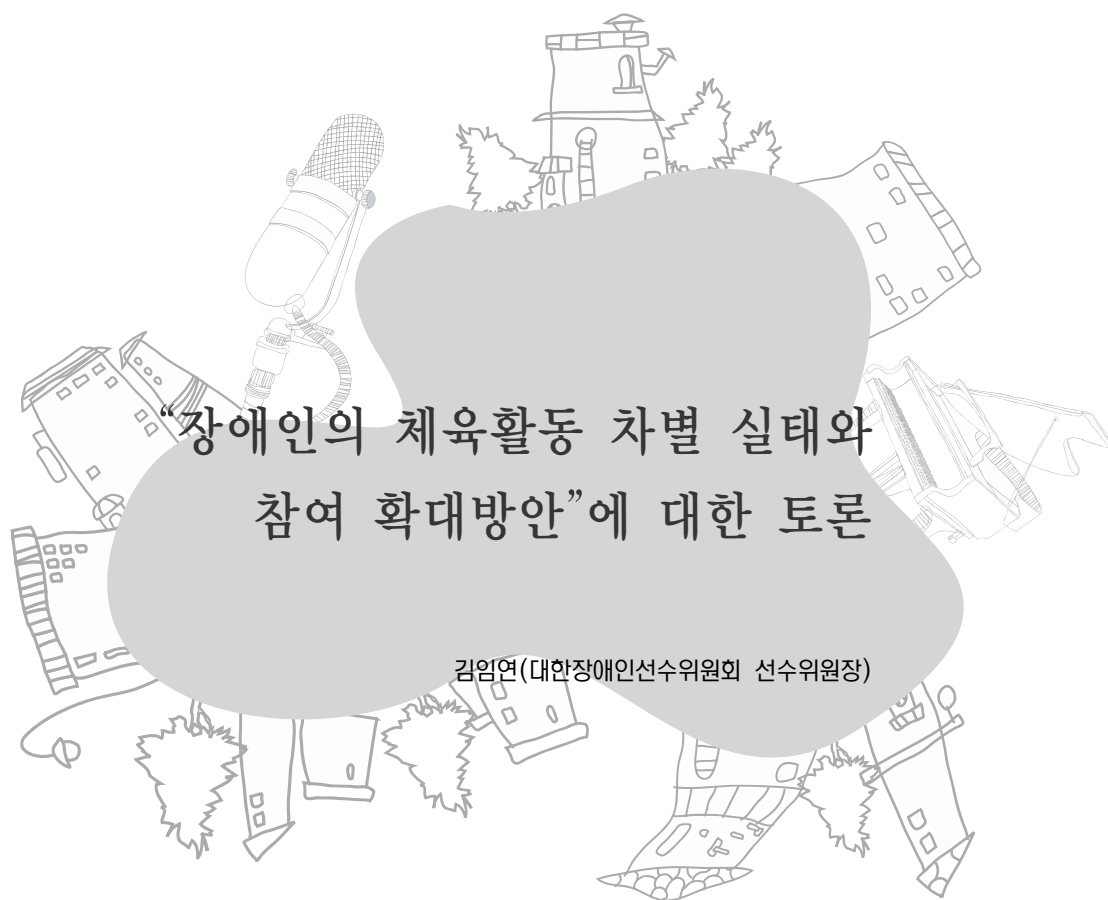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 누구나가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한 종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장애유형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 장애계층의 다양한 요구 수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의 체육프로그램 역시 일반 체육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경기방법의 수정이나 도구의 변형을 통하여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6131호(200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6호(2008)
-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2007). 장애인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대한장애인체육회(2007).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07). 장애인체육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07).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 보건복지가족부(2008). 전국 등록장애인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5332호(1998)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6호(2008)
- 체육과학연구원(2007).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방안
- 체육과학연구원(2008).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개선방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636호(1999)
- 한민규(2008).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지적장애연구, 10(2), 197-212
- DePauw, K.P., and Doll-Tepper, G.(1989). European perspectives on adapted physical activit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6: 95-99.
- Karen P. Depauw & Susan J. Gavron(1995). Disability and Sport.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

김임연(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선수위원장)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

김임연(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선수위원장)

I. 들어가면서

□ 먼저,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변화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저는 장애인선수 출신으로서 평소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민규 교수님이 제시했던,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산적인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문제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 더 좋은 분위기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긍정적 방향으로 접근 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국체육대학교 한민규 교수님의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교수님께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짧게 의견 제시코자 합니다.

II. 본론

1.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에 대하여

발제자의 지적과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체육활성화의 가장 큰 제약적인 요소는 장애인의 시설접근 방법에 있습니다. 특히 재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가장 큰 문제는 이동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접근방법에 큰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내 주차장 시설, 샤워시설, 장애인체육 용기구 확보 등 1차 욕구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만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결국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2.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하여

생활체육의 구성 요소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특수한 상황 및 여건에 따른 행동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교육받은 지도자의 배치는 적절한 지도방법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육을 수행하는데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체육지도자의 국가양성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발제자의 의견처럼 자격급수별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양성에 대한 연수 및 검정을 강화하는 것도 적극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들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대우도 병행되어야만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지원에 관하여

현재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동호인 클럽에 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중목선정에서부터, 클럽활동, 전문체육으로 징검다리 역할 등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반면 동호인 클럽 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비 정부 및 지자체의 폭넓은 지원 및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에 관하여

시설, 지도자, 조직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성별을 고려한, 나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지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시될 때 장애인생활체육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에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에서도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필요하다면 주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III. 나오면서

끝으로, 장애인체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발제 원고를 준비 하시며, 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한민규 교수님께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 장애인관광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 훈(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한국 장애인관광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 훈(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I. 서 론

‘여행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 한때 여행과 관광이 엘리트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이제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자연을 접촉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휴식과 지식을 얻는 즐거운 행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행복추구권’으로 인식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여행과 관광의 권리에 대한 선언과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UN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관광과 여가의 권리를 선언하며 각 국가가 장애인 관광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위는 ‘관광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역시 관광여가분야임. 계층별 휴가율을 보면, 500만 원 이상은 약 83% 이상을 보이는 반면, 200만 원 이하는 약 43%에 불과한 실정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 및 일본 등은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실태조사와 연구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장애인 여가관광을 위한 제도, 시설,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였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비정부기관과 민간기업도 이 법안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접근성을 마련하였음.

그동안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은 포괄적 차원의 행복권보다는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축소된 권리보장이 지배적이며, 특히 장애인 관광에 대한 실질적 차원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음.

본 연구는 장애인 관광의 현황과 한국관광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인터뷰, 관찰조사 및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장애인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관광과 장애인 관광에 대한 시각변화

1. 장애인 관광에 대한 시각변화 : ‘복지 +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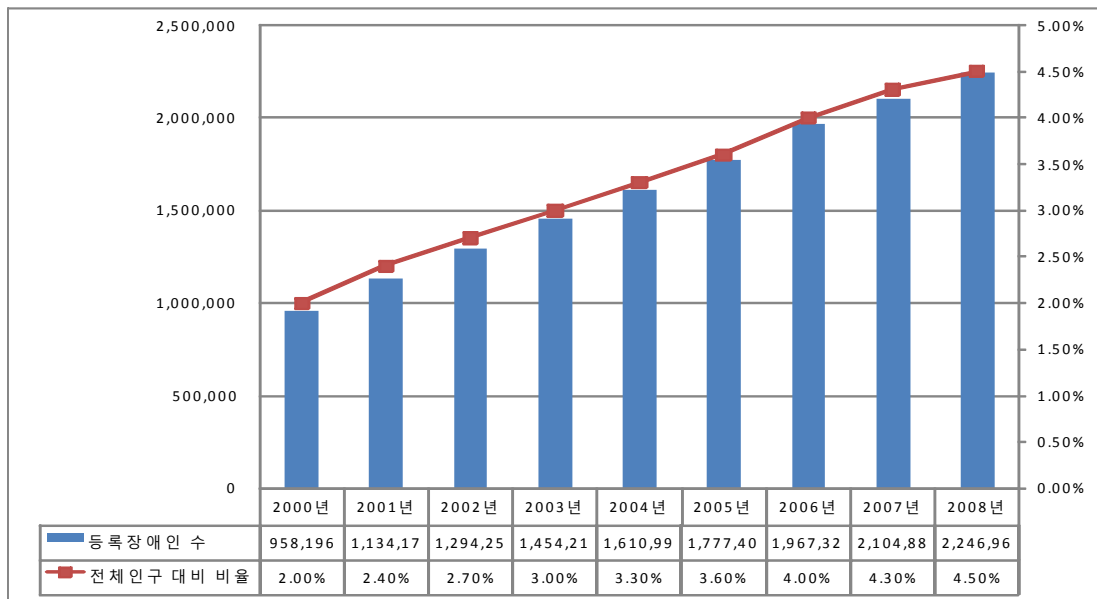
■ 복지적 접근과 산업적 접근의 결합필요

문화부의 장애인 관광에 대한 접근은 복지부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관광의 복지효과 뿐만 아니라 산업적 효과를 포함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 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시혜’로서의 장애인 관광 수용태세에서 ‘새로운 마켓 창출’을 위한 장애인관광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등록장애인 수와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의 추이 변화



■ 새로운 마켓창출(새로운 관광객 창출)

장애인 관광(국내외)은 수용체계의 특성 상 ‘노인관광(실버관광)’과 밀접하게 일치됨. 노인은 장애인과 함께 이동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대상임. 따라서 같은 시장군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유아를 동반한 가족관광의 경우도 관광을 위한 이동과 접근성에 있어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제한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은 장애인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과 흡사하게 진행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의료관광’ 역시 완쾌되기 전 한국관광을 병행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리조트와 관광지에서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함.

1. 한국관광에 대한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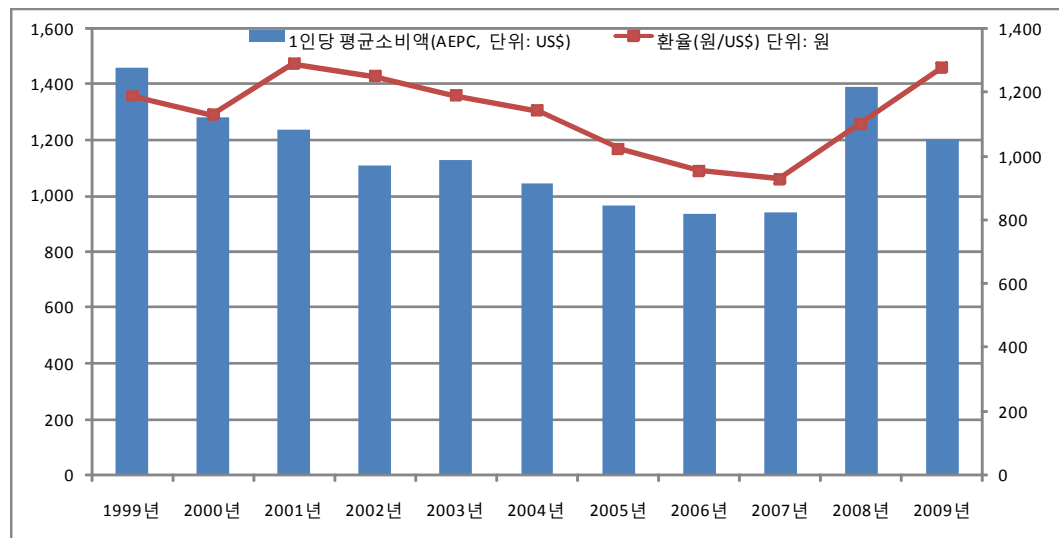
■ 1인당 외래관광객 지출액(연도별)

1인당 외래관광객 지출액은 IMF 이후 1999년부터 2007년 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수치를 보이지만 환율의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중국과 일본관광객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관광 선택의 이유로 저렴한 가격(일본), 또는 일본의 대체지로 지적되고 있음.

한국 관광상품 자체의 고급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1인당 평균소비액 및 환율(원/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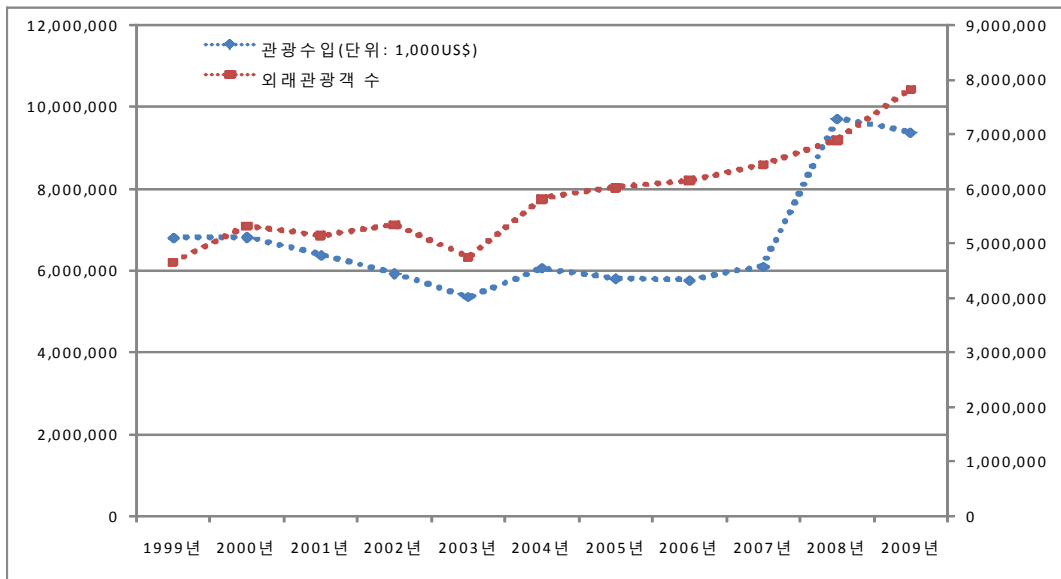


■ 총 외래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추이(연도별)

총 외래 관광객 수는 IMF 이후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총 관광수입은 2008년 까지 답보상태 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과 2009년의 급격한 수입증가 역시 환율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함.

관광정책의 목표를 '외래관광객 수'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실질적 효과에 있어서는 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수입증가와 체류일 수 증가 등 질적인 정책 목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관광정책의 변화 필요: 양(量)에서 질(質)로

질적인 관광상품과 질 중심 관광을 위한 정책목표가 필요함.

기존의 관광마켓 대상에서 '새로운 고급마켓'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한국 관광상품의 변화 필요. '고급상품형', 'FIT형', '장기체류형'에 대한 고려와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관광의 효과

■ 새로운 국민관광 및 일본과 해외시장 개척

최근 일본 관광객의 수와 소비는 정체되어 있음.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실버관광을 개척할 수 있음.

일본의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와 보험 등으로 해외여행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

국내 장애인 수와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약 220만 명이상이며 약 4.5% 증가추세에 있음. 국내관광의 인프라바운드를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은 기존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특히 장애인 관광은 돌봄을 위한 가족 또는 동반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 이상의 잠재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장애인이 체류하기 위해서 대부분 고급숙박과 고급상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고급 관광시장으로 평가됨. 장애인 관광은 대체로 장기체류형 관광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출액이 높음.

■ 국민적 · 국가적 편익

UN과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과 관광활동은 인권적 차원 보장하고 있고 있음

장애인 관광 활성화는 소외없는 세상 및 행복한 사회로서 한국사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함.

선진국형 관광 수용태세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관광이미지와 국가품격을 높일 수 있음.

III. 장애인관광 실태조사 결과

1. 장애인관광 실태조사 현황

1) 장애인 관광 실태현황분석

구분	분석결과
일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운영은 숙박업 약 85%로 가장 많음. 관광지 약 58%, 음식점 43.9%, 교통시설 21.7%로 조사됨 관광지 1곳만이 홈페이지에 장애인관광정보 제공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210개소, 리조트 21개소, 콘도미니엄 31개소, 기타 3개소 분석 숙박업의 약80% 정도가 주출입구 높이 2cm미만이거나 경사로 설치 숙박업의 27.5%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미설치, 일반 엘리베이터 버튼 높이 1.4m이하는 11.7%만이 기준에 부합 로비 주출입구는 약 70% 정도가 기준에 부합, 장애인용 화장실은 업체 대부분이 기준 미달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83%가 보유, 주차구역 넓이 기준은 약 35% 정도만이 기준에 부합 숙박업체의 약 25%만이 장애인전용 객실 보유 화장실 내부면적은 6.8%만이 장애인용 화장실 기준에 부합, 장애인용 객실 내 욕실에 샤워의자 비치업소는 약 3%에 불과 안내견 출입은 호의적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 안전시스템은 18% 정도만이 갖추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당 352, 중식당 145, 양식당 67, 일식당 39, 패밀리레스토랑 110, 일반레스토랑 4, 기타음식점 149개소 총 866개소 분석 음식업의 약 28% 정도가 주출입구 높이 2cm미만이거나 경사로 설치 2층 이상에 위치한 음식점의 약 26% 만이 엘리베이터 설치 85% 정도가 좌석 테이블 보유 음식점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약 27%, 한식당의 경우 11.4%에 불과 음식점 중 10.6% 만이 장애인용 화장실 보유, 한식당은 4.5%에 불과 안내견 출입은 전체업체 30.9% 가능, 패밀리레스토랑은 16.4% 만 가능, 이동식 카드 단말기 보유업체는 11.5%에 불과
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지별 유형분류를 통해 총 431개소 분석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관광지는 5% 미만으로 낮음, 장애인 요금할인은 23.2% 휠체어 등 대여는 관람시설과 고궁 / 전통체험지역에서 비중 높음, 해안 / 수변지역은 비중이 7.5%로 가장 낮음 장애인을 위한 입식안내판의 정보는 매우 부족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관광지의 약 40% 보유, 주차지역 넓이 기준은 약 23.9% 정도만이 기준에 부합 관광지의 약 53%가 장애인용 화장실 보유, 남녀구분은 약 29% 정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광지의 편의 및 부대시설 주출입구는 약 20%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보행로는 10.7%만 구비됨, 휠체어 안전시설 설치 23.2%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12.6%만이 장애인에 대한 종사원교육 또는 매뉴얼 보유

2) 실태조사 분석 시사점

■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지자체 관리 관광시설 입식안내판에 정보제공 의무화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적 조항 강제성 명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적 조항에 관해 의무적인 명시기준제시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필요

■ 업체의 안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스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안전장치 구축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IV. 장애인관광 모니터링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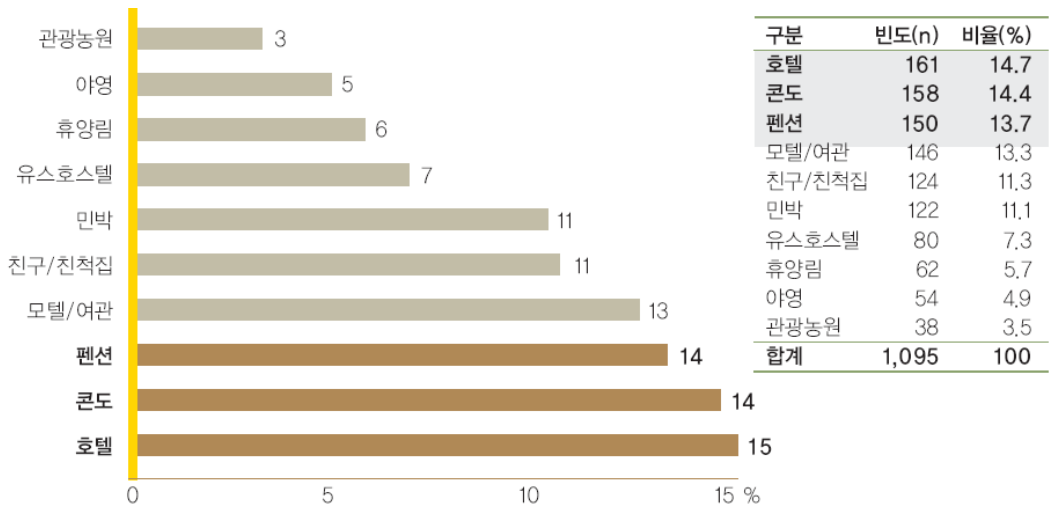
1.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 관광활동 숙박시설 분석

■ 관광활동 시 숙박시설 이용여부

호텔, 콘도, 펜션 등 최신시설이나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을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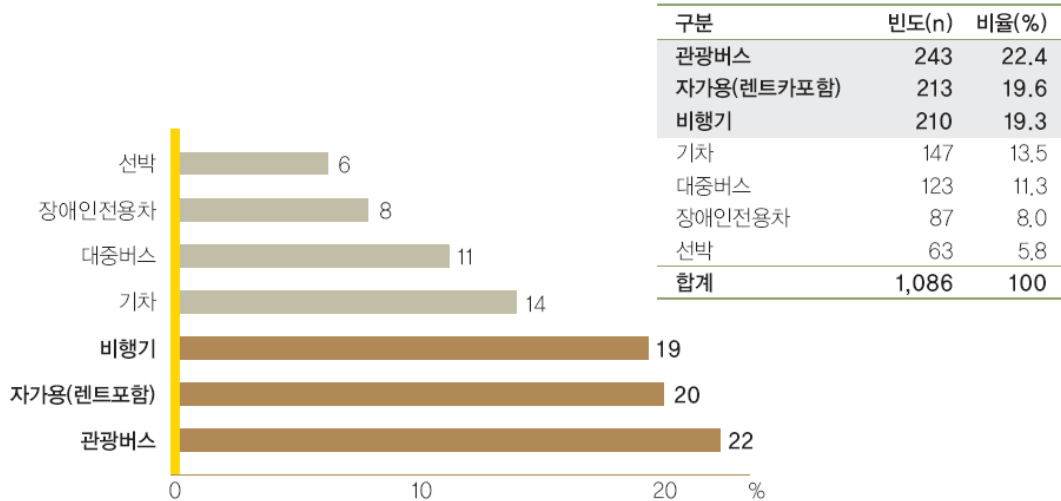


주) 도표상의 수치(응답률)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버림한 수치임. 정확한 수치는 우측 표 참조.

(2) 관광활동 교통시설 분석

■ 관광활동 시 교통시설 이용여부

주이용 교통편은 관광버스, 자가용, 비행기 순으로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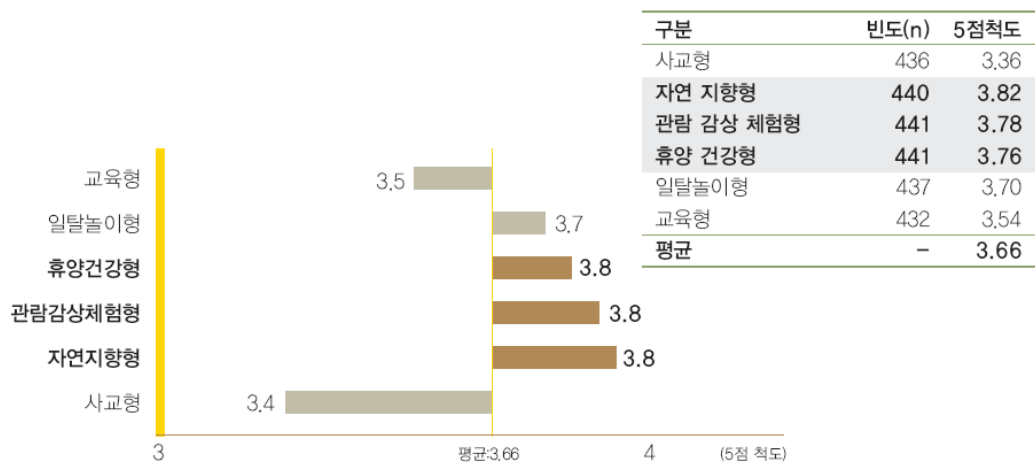


주) 도표상의 수치(응답률)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버림한 수치임. 정확한 수치는 우측 표 참조

(3)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동기

■ 관광활동 참여 동기 분석

산, 바다 등 자연 감상 동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새로운 곳 체험, 휴양 건강 동기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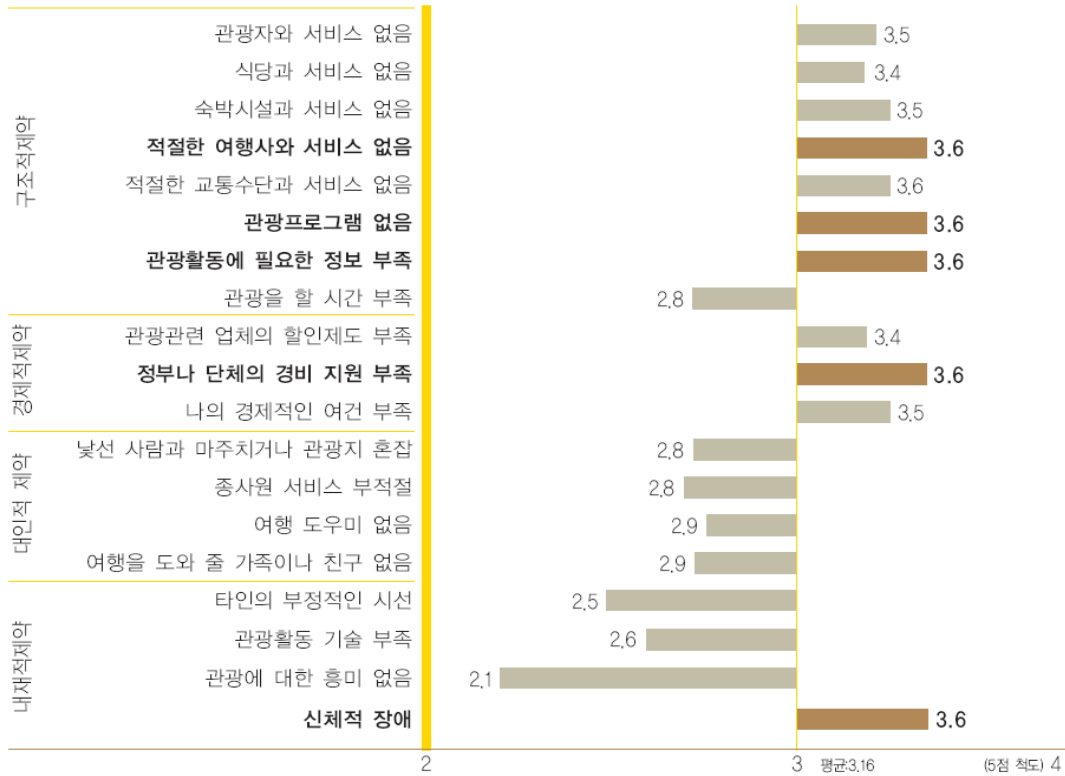


주) 도표상의 수치(척도 평균)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수치임. 빈도는 무응답 제외, 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4)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제약요인

■ 관광활동 참여 제약요인 분석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정보부족, 여행경비 지원부족을 제약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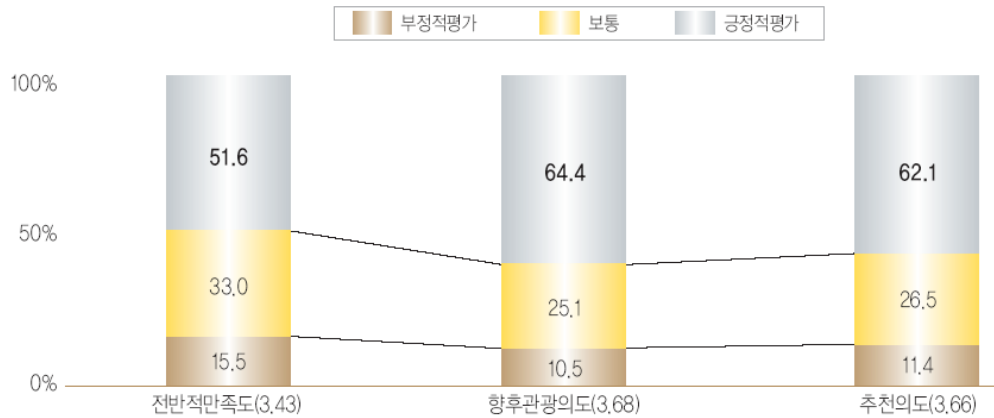


주) 도표상의 수치(척도 평균)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수치임. 1(전혀 제약을 느끼지 않음)~5(매우 제약을 느낌)

(5) 장애인의 관광활동 만족도

■ 관광활동 전반적 만족도, 향후 관광의도 및 타인 추천의도 분석

전반적 만족도 51.6%, 향후 관광의도 64.4%, 타인 추천의도 62.1%가 긍정적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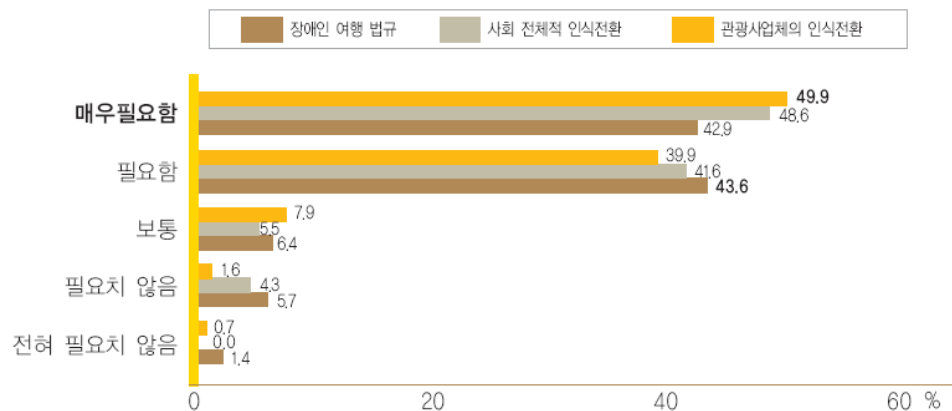


주) 방향 평가- 평가의 편의를 위해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변환하여 백분율로 비교, 1-2 : 부정적 (1로 지정), 3 : 보통(2로 지정), 4-5 : 긍정적 평가(3으로 지정) ()은 5점 척도기준 평균

(6) 장애인관광을 위한 정책제안

■ 장애인관광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 분석

80% 정도가 장애인여행을 위한 법규마련과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함



주) 도표상의 수치(비율%)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수치임

(1) 장애인관광을 위한 개선사항 및 정부 지원(개방형 질문)

■ 장애인관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

정부의 여행관련 재정지원, 관광지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요구

구분	내용	빈도(n)	비율(%)
정부의 재정지원	준조세지원, 여행 보조금지원, 버스할인, 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여가비 지원	40	42.1
혜택의 공정성 추구	현실적인 지원, 복지향상, 균등한 교육 보장 우선, 관광지 내 의료비 또는 의료시설 지원, 삶의 여건 개선 필요	11	11.6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복지정책 마련,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프로그램 및 관광지 개발, 저렴한 상품 개발, 관광기회 제공, 장애인 패키지/ 배낭여행 제도 마련, 공기업의 장애인 후원제도 마련, 관광지 개발 시 장애유형별 시설 마련, 복지관 활성화 및 확대, 무료 관광서비스 확대, 장애인관광 활성화제도(월 1회 여행 지원 등)	31	32.6
인식개선	비 장애인의 인식개선, 종업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마련 (정책입안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관광활동)	13	13.7


Σn= 82, 다중응답포함 응답 Σn= 95/ 100%

2. 인터뷰 및 관찰조사 분석

1) 복지관광 프로그램 관찰 조사

환승 과정의 문제점


- ▶ 제주도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 대형 버스가 아닌 일반 관광 버스였기 때문에 승하차에 시간이 많이 걸림

이미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버스 승하차 모습 • 리프트가 없는 버스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업혀서 타고 내릴 수밖에 없음 • 이에 필요한 시간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오래 걸림 • 장애인이 업혀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동반자에 대한 미안함 마음을 갖게 만들게 됨


■ 관광 프로그램 참가 및 체험

관광 코스의 적절성

- ▶ 바닷가의 경우 모래사장이나 바위들이 많아서 휠체어나 목발이용 장애인의 경우 멀리에서 구경하는 수준에서 그침

이미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가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 • 모래사장 자체에 바위가 많아 이동이 쉽지 않음 • 또한 모래사장 and 주차장 사이의 경제석이 10cm이상 올라와 있어서 휠체어이동이 불가능함

이미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자연사박물관으로 이동하는 모습 •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옷을 입고 목발을 잡고서 관광지로 이동했음 • 경사가 있었으나 비가 오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계단으로 오르고 있으나 동반자의 보조가 필요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여 모습 • 레크리에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
---	---

여행의 혜택: 새로운 추억과 관광기회 제공


- ▶ 조사 중 복지관 직원을 통해서 한 부부의 감동을 전해들을 수 있었음. 한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는데 서로 스킨십이 거의 없었다고 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부부간 키스를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키스가 부부 생활 첫 키스였다고 함. 억지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관광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즐거움 속에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함.

■ 관광지 및 관련 시설 이용의 특징

관광지

이미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미지식물원의 전동 스쿠터 대여 모습 • 여미지식물원은 장애인 등의 노약자에게 무상으로 전동스쿠터를 대여해 주고 있음 • 전동스쿠터를 타면 로비부터 각 화실을 관람할 수 있음 •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입구는 계단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는 스테이지 공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미지식물원 내 화장실 안내도 • 식물원 1층에는 화장실이 없으며, 지하1층에 화장실이 있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갈 수 없어 휠체어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건물 밖 화장실을 이용해야 함

- ▷ 관광지 이동 중 턱이 있을 경우 경사를 마련해 둔 곳이 많았지만 경사가 너무 높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울 수 있는 철판으로 경사로를 만들어두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이미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사박물관의 경사로 • 휠체어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를 만들었으나 비가 와서 매우 미끄러웠음 • 휠체어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밀어주는 동반자까지 이동시 미끄러워 위험이 더욱 높음



V. 해외 장애인관광 사례분석

1. 해외 장애인 관련 법제검토

1) UN 장애인권리협약(2006)

장애인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 UN에서는 1980년부터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채택, 1981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으로 시작하여 2002년 8월부터 8차례의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협약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수행으로, 2006년 8월 8차 특별위원회에서 총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음(국가인권위원회, 2007).

2) 미국 장애인관련특별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 미국 장애인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실인정과 목적 및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사천삼백만의 미국인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그 숫자는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도 장애인의 차별이 있었으며 현대에도 고용, 주택, 공공시설, 교육 등에서 계속 노골적이고 의도적 배제가 있으며, 이를 구제하는 법적 노력이 없었음 • 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확실하고 종합적인 국가의 기본방침을 정하며 차별에 대응하는 명확하고 강도 있고 지속적인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정함
고용과 차별 및 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의 정의 및 고용에서의 차별과 반증, 정약물과 알코올의 불법적 사용, 고시, 규칙, 시행 등에 대하여 명시
공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에 대한 금지와 그 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 및 공공서비스의 정의와 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 및 시행, 규칙 등에 대한 명시와 공공사업체가 제공하는 공공교통기관에서 차별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
기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또는 특정한 철도운영 외의 공공교통 및 도시간 철도와 출퇴근용 철도에 의한 공공교통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의 준수사항 설명 등

2. 해외 장애인관광 사례분석

4) 미국의 장애인관광 사례

(1) 법·제도적 측면

건축물장애에 관한 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1968):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설립된 건축물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법으로 규정

장애인 접근성 실행 위원회(The Access Board): 장애인 접근성 실행 위원회가 관련법규의 이행 여부를 감시함.

사회복귀에 관한 법(The Rehabilitation Act, 1973): 연방정부 지원 서비스에 장애인 이용 프로그램 포함과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미국 장애인기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장애인 차별금지와 접근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신체장애자와 노인을 위한 복지관광정책개발: 관광 및 여행관련 직접적인 정책 개발 및 제도화

(2) 인프라 측면

접근성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각 분야에서 장애인 관광객 수와 숙박관광 행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저상버스 도입 및 기존 대중교통 수단에 리프트 장착하여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확대함.

(3) 콘텐츠 측면

장애인을 위한 미국대회(Accessible America Contest):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디자인 등이 우수한 도시평가, 장애인 모범도시선정

공원 레크리에이션 부서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계획: 장애인 전용 주택개발 및 주거변경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문화 예술 시카고 축제(Arts and Culture of Disabilities Chicago Festival-Body of Work): 축제 개최를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의 국제적 중심지로 자리매김

장애인 렌터카 서비스(Avis Access): 장애 유형별 장애인 관광객 렌터카 서비스

장애인 택시 이용 쿠폰북 발행: 장애인과 노인에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북(Script Book)을 교부

(4) 공공마케팅 측면

장애인 전용 온라인 여행업체(www.vacationstogo.com): 장애인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 여행업체

전국 장애인 단체: NOD(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여행, 외식, 및 hospitality분야에 대한 최초의 장애인 시장조사 실시

5) 일본의 장애인관광 사례

(1) 법·제도적 측면

배리어 프리(Barrier-free)법: 노인, 장애인의 이동 및 건축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장애인 기본법(1970년 5월 21일 법률 제84호): 장애인의 문화,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 시설 등에 관한 환경을 조성함.

이용자 입장의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법」(2003년 제정): 레스토랑, 호텔, 버스, 항공기 등 장소 및 교통기관에 이용에 대한 장애인 거부 방지법

(2) 인프라 측면

휠체어 전용 객실: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전용 객실 구비 및 턱을 없애고 경사로 위주로 설계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관광지 정보가 수록된 관광 가이드북 제작

난간 설치, 안내판 등 적은 비용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함.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통한 장애인을 위한 계단 및 경사로 기준 마련

도로 턱 정비 및 관광시설 내(內) 휠체어 렌탈 서비스 시행

다양한 노선의 장애인 전용 순환버스 운행

장애인 전용 대형 택시 운행

「휠체어 외출 맵」발행 :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관광시설 지도 발행 및 배부

장애인수첩을 제시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혜택부여

카무이노 모리공원: 장애 아동 및 장애 가족을 위한 자연관찰이나 체험학습 장소 제공



카무이노 모리 공원의 장애인 실내 놀이 공간

호텔 장애인 룸 배정 : 호텔 객실 장애인 유형에 따른 모든 시설 구비

장애인 시설 설치 시 사업비 지원

택시 5대중 1대가 장애인을 위한 장치설치

(3) 콘텐츠 측면

장애인을 배려한 전용 식사 메뉴 개발: 호텔 내 음식점에서 장애가 심한 사람을 위해 먹기 쉬운 메뉴 개발

(4) 공공마케팅 측면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지도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소개 CD 무료 배부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가나가와 현 오다와라시: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운영 및 장애인 수첩 소지 시 할인혜택

장애인 헬퍼(helper) 취득자에 대한 고용: 장애인 도우미 제도 시스템 운영

기후 현의 타카야마시는 2001년에 「관광 복지 도시 선언」: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평가하는 환경개선 모니터링 투어 실시

지역사회 리더의 의식전환-다카야마시 쓰치노 시장: 지자체 시장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개선 및 지역이미지 전환

장애인 도보 관광지도 배포: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시설 및 도로를 표시한 관광지도 무료 배부

6) 호주의 장애인관광 사례

(1) 법·제도적 측면

■ 장애인 서비스 법(The Disability Service Act, DSA, 1993)

숙박 및 서비스에 관련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은 장애인도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관광 서비스 업체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야 함
공공에 의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반드시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됨.

(2) 인프라 측면

Air Bridges, Sky Chairs 및 공항시설항공 : 공항 및 비행기 내 휠체어 서비스 및 스카이 캐어(Care) 시설 잘 갖추어져 있음.

기차 장애인 전용 구간 마련: 열차의 한 구간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램프, 좌석, 화장실,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서비스

보트 및 페리 서비스 : 휠체어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시설 페리 및 보트에 설치

택시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개조된 차량 운행 및 장애인 전용 밴 렌탈 서비스 실시

장애인 전용 객실 마련 : 호텔의 장애인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 및 소도시 모텔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시설구비

하우스 보트(House Boats) : 크루즈 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및 숙박용 캐빈 설치

장애인 전용 리조트 : 장애인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오케롤린스(O'Carrollyn's)

리조트: 장애인 계층별 별장 및 리조트 이용 가능

중저가 숙박시설(budget accommodation) : 장급 숙박시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캐라반 공원(Caravan Parks)과 캠핑지역 : 장애인 캠핑 가능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사우나, 화장실 시설 제공

(3) 콘텐츠 측면

장애인 전용 여행상품: 여행사에서 장애인 이용 가능한 차량 및 가이드 제공



장애인관광을 위한 전용 자동차

(4) 공공마케팅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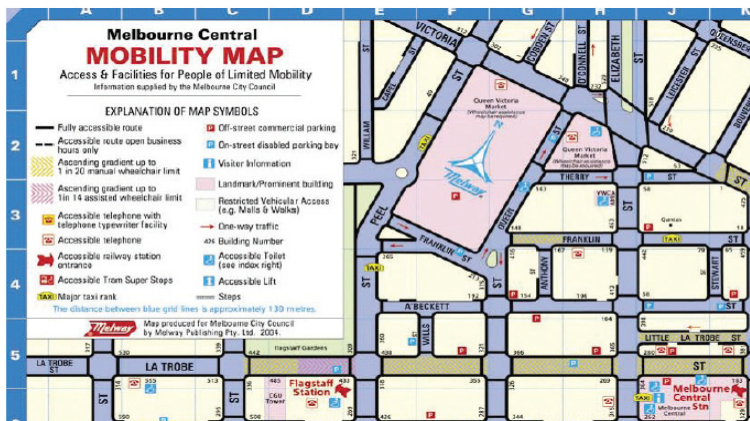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관광 포털사이트(www.accessibility.com.au) 개설을 통한 관광과 여행에 관한 정보 제공

멜버른(Melbourne) : Access for all abilities(www.melbourne.vic.gov.au)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호주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례 : 선박 내 장애인 이용 시설 구비 및 스노우클링 프로그램 실시

공원 내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 프로그램 제공: 사막공원 장애인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포털 정보 책자 : Accessing Melbourne라는 책자는 관광을 위한 공항, 호텔, 이벤프, 관광지, 쇼핑 등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멜버른의 모빌리티 맵의 부분

TADAS(Travellers Aid Society of Victoria) 도우미 서비스 : 장애인관광객을 위한 실질적 도우미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퀸스랜드 주의 「장애인 서비스 계획 2007-2010」 : 장애인 관광 관련 목표 및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광활성화 계획 실시

7) 뉴질랜드의 장애인관광 사례

(1) 법·제도 측면

뉴질랜드는 법으로 새로운 빌딩이나 주요 건물의 재건축 시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당함’ 시설을 설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인프라 측면

■ 장애인 전용 투어 프로그램

엑세스블 투어스, 제트세이프 같은 여행사들은 장애인 개인 및 단체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 및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관광 및 방문 시 장애인 카드 발급

관광기간 동안 장애인 임시 카드 발급하여 각종 혜택 부여

■ 장애인 화장실 이정표 및 마크

소규모 식당에도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조그만 식당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함

(3) 공공마케팅 측면

■ 웨카(Weka, What everybody keeps asking)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관광, 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 장애인 전용 관광 가이드북 ‘ACCESSIBLE NEWZEALAND’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음식점 다양한 정보 수록한 전용 가이드북



장애인 전용 가이드북

8) 영국의 장애인관광 사례

(1) 법·제도 측면

■ 장애인차별금지법(DDA,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영국에서 1995년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장애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정부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환대산업은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DDA는 정부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확보뿐만 아니라 ‘내일의 관광(Tomorrow’s Tourism)’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영화, 박물관, 관광명소 이용 요금의 할인혜택

관광 및 문화생활 전반 특별 할인혜택 받을 수 있음

■ 홀리데이 케어(Holiday Care)

영국의 지역관광청과 협력하여 장애인 시설 기준에 따른 숙박업소 심사 및 정보제공

VI. 장애인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및 개선방안

1. 장애인관광 기본구상

1) 기본컨셉 및 제안과정

(1) 추진방향

- 장애인관광은 복지관광과 새로운 관광시장개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함.
-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관광활동과 접근 가능한 시설공간은 노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 임산부, 의료관광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외 없는 관광기회 확보와 새로운 관광시장 전략이 될 수 있음.

(2) 기본컨셉

-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시설 구축
- 질적으로 풍부하고 재미있는 관광프로그램과 체험활동 제공
- 장애인을 포함한 장벽 없는 정보접근성 확보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구축
- 소외 없는 관광을 실현하는 복지관광 차원에서 접근하여 실버관광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생산적 관광의 실천 방향 제시



“장애인관광의 접근성 확대는
노약자를 위한 소외 없는 관광(barrier free)을 실현하는 복지관광이며,
실버관광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생산적 관광의 실천이다”

(3)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 구상 절차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문 17개 정책 개선방안 제안

구분	개선방안	
법·제도 부문	단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관광진흥계획 내(內)장애인관광 진흥방안제시
	중·장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보완 • 공공부문의 장애인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간부문의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장애인관광시설 인증제도 마련 • 장애인관광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인프라 부문	단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광 관련 시설의 안전성 확보 사업
	중·장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통서비스 개선 • 장애인시설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마케팅 부문	단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장애인관광 관련 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다양화
	중·장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 장애인관광객을 위한 장애인카드 발급 • 장애인관광 모범 관광지 및 관광시설 선정
콘텐츠 부문	단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화 • 장애 유형별 관리지침 마련 및 종사자 교육
	중·장기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콘텐츠화 • 장애인 이용 관광지 대중교통 쿠폰북 발행



2.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법·제도 부문]

1) 관광진흥계획 내(內)장애인관광 진흥방안 제시

(1) 추진방향

관광진흥계획 추진 시 장애인관광을 위한 진흥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내용적으로는 관광인프라 및 시설지원 사항, 장애인 관광 프로그램 운영방안, 관광안내체계 개선방안,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으로 실현가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명시해야 함.

(2)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제3차 관광진흥계획 내 장애인 관광 진흥방안 제시	○			○ (관련연구소)

2)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보완

(1) 추진방향

국민 모두가 관광을 위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관광 관련 법규에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광기본법의 개정

관광지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의무적 규정을 지키도록 제시

(2) 세부 추진 계획

■ 관광기본법 개정

관광기본권 정립을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광권을 관광기본법에서 명시해 주어야 함
국민복지관광의 실현을 위해서 관광 취약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소외 없는’ 국민복지 관광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관광기본법에 포함돼야 함.

■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진흥법 상 사업설치 내용에서 시설별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명시해야 함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관련시설에 법적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 단계적 도입 의무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관광기본법 개정	○			
관광진흥법 개정	○			

■ 사례1: 장애인 관광활동 증진을 위한 관광기본법 보완

조항	개정·보완방향
관광기본권 정립	정부는 모든 국민이 관광할 권리를 기본권리로 정립하여야 함
국민복지관광의 실현	정부는 관광활동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문화의 발전과 소외 없는 국민복지 관광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례2: 관광진흥법 개선: 관광진흥법상 관광관련사업의 장애인시설 설치 조항 삽입

세부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구역	주출입구	복합도	계단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도	경보	객실	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여행업	●	—	●	●	○	○	○	○	—	—	○	—	—	—	—	—	—
관광숙박업 (일부중복)	●	●	●	●	●	●	●	●	○	—	●	○	○	●	—	○	—
관광객이용시설업	●	●	●	●	●	●	○	○	—	—	●	○	○	—	○	—	○
국제회의업	●	●	●	●	●	●	●	●	—	—	●	○	○	—	—	○	—
카지노업	●	●	●	●	●	●	○	○	—	—	—	○	○	—	—	—	○
유원시설업	●	●	●	●	○	○	●	○	○	—	●	○	○	—	—	○	○
관광 편의시설업	●	●	●	●	○	○	●	○	○	—	●	○	○	●	—	○	○

●의무, ○권장, —제외

3) 공공부문의 장애인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추진방향

장애인을 위한 관광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단기적으로 관광 활동을 촉진하고 관광활동을 통한 재방문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장애인관광의 자발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업협회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광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해 많은 장애인이 복지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별단위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개별 관광을 촉진하여 장애인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음.



(2)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관광 바우처 제도 실시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바우처 제도를 시행함.

바우처 지원은 근로 소득이 없는 장애인, 노인 및 청소년 장애인, 독거 및 모든 가족이 장애인인 장애인 가족 등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 장애인복지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각 지자체로 확대

현재 일부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광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가능한 많은 장애인이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간기업과 복지단체가 ‘장애인관광 기금’을 확보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함께하는 관광’개발

“(가칭) 함께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대학의 ‘특수교육학과’와 ‘관광학과’ 대학생 및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여하는 대학생이나 비장애인에게는 향후 ‘투어헬퍼’ 전문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은 관광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비장애인과 접촉함으로써 사회적 적응을 높일 수 있으며, 비장애인 역시 장애를 이해하고 인간문화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가능함.

본 프로그램은 향후 장애인관광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관광의 모니터링’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장애인관광 바우처 제도 실시	○	○	○	
장애인복지관광 프로그램 운영 각 지자체로 확대	○		○	
‘함께하는 관광’ 개발	○		○	○(관련 연구소 및 대학교)

4) 민간부문의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추진방향

민간부문의 업체가 장애인시설 및 서비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관광의 적절한 환경을 구축함.

장애인을 위한 할인제도를 민간 부문에서도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내에서 부족한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대한 행정지원 및 홍보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여 장애인을 위한 여행 콘텐츠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장애인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민간 부문의 관광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관련 시설 설치를 할 경우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마련

설치 사업비 지원 제도 홍보를 할 때 장애인을 위한 환경은 노인, 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많은 이동약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같이 전달하여 참여도를 높여야 함.

설치 시 관련법규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기준에 반드시 맞춰서 설비를 하도록 조건을 두어 제대로 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함.

■ 장애인 할인 사업비 지원

사기업의 할인제도 제휴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음.

민간 부문 운영 관광지에서의 할인제도를 시행할 경우 할인율을 관광지와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민간 부문 운영자가 장애인 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장애인관광 정보에 할인 관광지 홍보)

■ 장애인 전문 여행사 지원 정책 실시

장애인을 위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관광 관련 안내책자나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할인 상품에 대한 홍보 지원 및 행사 후원

일반 여행사가 역시 장애인관광 상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구축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장애인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			○ (민간 업체)
장애인 할인 사업비 지원	○		○	○ (민간 업체)
장애인 전문여행사 지원 정책 실시	○	○		○ (민간 업체)

5) 장애인관광시설 인증제도 마련

(1) 추진방향

국내 관광지 및 관련시설(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관광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안심하고 관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또는 관광호텔, 관광음식점, 굿스테이 등 기존 관광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 평가에 장애인 관광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도록 함. 구체적이고 올바른 평가항목 추가를 통해서 시설의 환경 개선 및 우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세부 추진 계획

■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장애인관광 우수 인증제도 시행

장애인 및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맞는 평가제도를 마련함. 평가항목에는 편의 시설의 유무 및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같은 무형적인 자원까지도 평가를 하도록 함.

인증제도와 함께 평가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시설물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인증업체는 공공사이트를 통해서 홍보 지원 해줌

■ 기존의 관광시설 인증제도 내에 장애인관광 평가항목 추가

새로운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같은 시설에 인증제도가 많아지면 업체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음.

단기적 관광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관광호텔의 등급평가 및 관광음식점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에 장애인 이용 부문을 반드시 포함시켜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장애인관광 우수 인증제도 시행	○			
기존의 관광시설 인증제도 내에 장애인관광 평가항목 추가	○			○ (관련 협회)



6) 장애인관광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1) 추진방향

장애인의 여행 계획을 수립해주고 장애인의 여행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투어헬퍼’라는 자격증을 신설하고 자격 취득 제도를 마련함. 이를 통해서 가족이나 복지관 직원을 대신해 장애인의 관광을 컨설팅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각 지역의 복지관과 관광안내소가 연계를 하여 지역의 관광도우미 봉사단을 운영하도록 촉진하여 지역 내외 장애인이 관광을 할 때 봉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세부 추진 계획

■ 투어헬퍼(Tour helper) 취득 제도 마련

국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벤치마킹함.

장애인관광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교육 과정을 담은 투어헬퍼 전문 인력 과정을 개설함.

투어헬퍼 취득자는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주요 관광 관광지 및 안내소에 고용, 배치되도록 함.

■ 지역의 관광안내봉사단 결성 촉진

지역의 복지센터와 관광안내소가 연계하여 지역 봉사원이 관광 안내를 도울 수 있도록 함.

관광안내봉사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광안내소에서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하여 봉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관광안내봉사단이 조직되면 이를 국내 여행사 및 관광정보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행사와 지역 관광안내봉사단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투어헬퍼 자격 취득 제도 마련	○			
지역의 관광안내봉사단 결성 촉진	○			○ (관광안내소 운영 기관 및 지역 복지관)

[인프라 부문]

1) 기존 관광 관련 시설의 안전성 확보 사업

(1) 추진방향

경사로 개보수 사업을 유도하여 기존에 설치된 경사로를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함.

비상 사고를 대비해 장애인을 위한 안전 대피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해야 함.

(2) 세부 추진 계획

■ 관광 관련 시설물 내(內) 경사로 개보수 지원

기존에 마련된 경사로에 대한 점검 및 개보수를 지시함.

경사로 12도 이하 및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도록 함.

제대로 공사가 돼 있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사로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함.

■ 장애인 비상 사고를 대비한 안전 정보 표시 의무화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비상 발생에 대한 예방 정보를 안내해야 함.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전달 가능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 지체장애인은 이동 가능한 대피 통로 안내, 시각장애인은 밝은 비상조명 사용 및 비상통로에 점자 표기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위험 진동 시설 등이 마련돼야 함. 또한 정신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시설 내에 있을 경우 종사자가 반드시 장애인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는 ‘장애인 우선 대피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관광관련시설 내 경사로 개보수 지원	○			○ (관광관련시설 단체 및 업체)
장애인 비상 사고를 대비한 안전 정보 표시 의무화	○			○ (관광관련시설 단체 및 업체)

2) 장애인 교통서비스 개선

(1) 추진방향

장애인을 위한 전용 운송 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내외의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택시와 같은 기존의 운송 차량을 지역 봉사대 형식으로 모집하여 지역의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참가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개최 시 이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은 관광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2)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 전용 콜밴(Call Van) 운영의 확충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콜밴의 운영 수를 확대함.

콜밴 운영 업체 및 협회에게는 운영비 보조 이외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함.

■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봉사단 결성 촉진

지역의 장애인 시설과 지역 내 택시회사 간 협력을 유도함.

택시회사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지원받고 택시회사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이동 지원을 제공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장애인 전용 콜밴 운영의 확충	○		○	○ (관련 운송 업체)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봉사단 결성 촉진	○		○	○ (관련 운송업체 및 지역 복지관)

3) 관광시설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1) 추진방향

장애인이 관광지과 관광서비스를 쉽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및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세부 추진 계획

■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장애인관광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장애인 및 관광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시설에 도입하도록 장기적인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먼저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적용하고 점차 민간부문의 시설 개선을 유도해야 함. 또한 관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가 우선 시 돼야 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		○	○ (관련 시설 운영자)



[공공마케팅 부문]

1) 장애인관광 관련 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다양화

(1) 추진방향

장애인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관광에 대한 정보가 잘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및 관광관련 시설에 대한 연속적인 실태조사 필요함.
장애인이 직접 관광지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우수 관광시설과 불량 관광시설 등을 밝혀내어 보완을 해 나아가야 함.

(2) 세부 추진 계획

■ 정기적 실태조사 시행

일정 주기를 두어 관광지 및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관광 실태조사를 시행함.
실태조사 방식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현장 조사와 전화 조사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장애인 모니터링 투어단 운영

장애인과 보호자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어 일정 지역의 관광관련 시설을 모니터링 하도록 함.
각 지자체 단위로 실시를 할 경우 지역 모니터링 요원 선발을 통해서 조사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이 쉬워질 수 있음.
조사 항목은 중앙 정부에서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서 공통된 항목으로 시설의 장애 정도, 서비스의 품질 정도를 평가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정기적 실태조사 시행	○	○		○ (대학 및 조사기관)
장애인 모니터링 투어단 운영	○	○	○	

2) 장애인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추진

(1) 추진방향

공익광고협회를 통한 장애인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의 장애인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관광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세미나 및 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2)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관광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장애인의 관광은 국민의 기본 행복권입니다’ 등의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인간 기본권이라는 것을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에게 인지를 시키도록 함.

■ 관광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를 위한 인식 개선 세미나 및 안내 책자 배포

장애인관광에 대한 당위성, 해외에서의 장애인관광 시장 성장 사례, 선진 국가 발전을 위한 복지관광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책자 배부 및 세미나 개최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장애인관광 인식 개선 공익광고 제작	○			○
관광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 배포 및 세미나 개최	○	○	○	○ (관광관련업체)



3) 외래 장애인관광객을 위한 장애인카드 발급

(1) 추진방향

외래장애인관광객에게 국내 장애인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외국인장애인카드를 발급함.

(2) 세부 추진 계획

■ 외래장애인관광객을 위한 외국인장애인카드 발급

입국을 할 경우 공항에서 외국인장애인에게 장애인카드 발급함.

외국인은 자국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나 그에 준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하도록 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외래장애인관광객을 위한 외국인장애인카드 발급	○		○	○ (관련 운송 업체)

4) 장애인관광 모범 관광지 및 관광시설 선정

(1) 추진방향

장애인관광에 맞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관련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준비가 돼 있는 지역을 만들어 장애인관광 모범지역으로 선정을 함.

(2)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관광 모범 관광지 및 관광시설 선정

장애인관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관광에 대한 정책이 우수하고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장애인관광 모범지역으로 선정함.

모범지역이 장기간으로 발전하면서 실태조사에 의한 선발 과정이 아닌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하여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금이나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함.

(3)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장애인관광 모범 관광지 및 관광시설 선정	○	○		



[콘텐츠 부문]

1)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화

(1)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 유형에 따른 관광 상품 프로그램 개발

장애 유형이 여러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장애 유형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무함.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 장애인 등 장애인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통해 관광프로그램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들의 관광코스 개발로 노인들 또한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저소득 계층의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상품개발이나 비용지원 시스템 및 노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은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가족관광 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

■ 장애인 관련 행사 지속적 및 정기적 개최

일회성으로 그치는 장애인 관련 행사들은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방안 검토

(2)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장애인 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	○	○	○
장애인 유형별 관광프로그램개발	○	○	○	○
장애인관련행사 지속적인 지원	○	○	○	○

2) 장애 유형별 관리지침 마련 및 종사자 교육

(1) 세부 추진 계획

■ 관광 종사자 교육 실시

장애인 응대에 대한 종사자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장애인 응대 우수한 사원 선발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이용시설 만족도 높임.

■ 장애인 유형에 따른 관리지침서 제작 및 배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유형에 따른 관리 지침서 기준 마련
 관리지침서 제작해서 관광관련 시설, 호텔, 음식점, 관광지 시설 등에 배포를 통해 관광 종
 사자 및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 등의 안내 서비스 제공

놀이공원 및 테마파크의 어트랙션 탑승기준 마련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 이용 및 탑승 기준을 시설물 앞이나 매표소에 입식안내표지판
 설치

(2)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관광종사자 교육 실시	○	○		○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 등의 안내 서비스 제공	○			○
장애인 유형별 관리지침서 제작 및 배포	○	○		○



3) 장애인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콘텐츠화

(1) 세부 추진 계획

■ 공공기관의 장애인관광 온라인 포털사이트 추가개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광정보사이트에 장애인 관광관련정보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추가개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관광객, 청각 장애가 있는 관광객, 및 당뇨병이 있는 관광객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객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광공사 등 관광관련 홈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정부 및 주요도시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 업로드 및 배너를 통해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이 명기된 관광지, 호텔, 음식점, 교통서비스 등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음식점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표시화 하고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주는 포털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관광안내지도 무료 배포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광정보를 음성으로 소개하는 CD 제작

■ 관광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점자 메뉴판 제작 및 배포

호텔 내 안내표시 및 일반 음식점 내 점자 메뉴판 제작

기존의 메뉴판에 음식명과 가격정도 점자표시 추가

(2)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공공기관의 장애인관광 온라인 포털사이트 추가개설	○	○		○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광공사 등 관광관련 홈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	○	○	○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	○		
관광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점자 메뉴판 제작 및 배포	○	○	○	○(관련업체)

4) 장애인 이용 관광지 대중교통 쿠폰북 발행

(1) 세부 추진 계획

■ 장애인 쿠폰제 실시 협력업체 섭외

쿠폰사용 경비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유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쿠폰경비지원에 대한 혜택(업체 쿠폰북 홍보 등) 부여

■ 장애인들이 쉽게 관광지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접할 수 있도록 쿠폰북 발행

쿠폰북 발행을 통해 장애인들이 관광활동의 동기 부여

(2)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협력기관
장애인 쿠폰제 실시 협력업체 섭외	○		○	○ (관련 교통업체 및 민간기업)
관광지 교통쿠폰 발행 및 배부	○		○	○

VII.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의의

1) 결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및 관광관련 시설들의 장애인 관광접근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지역적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 측면 뿐 만 아니라 관광정보나 관광프로그램 등 전반적 수용태세가 부족하였음. 예상했던 대로, 장애인들 역시 관광활동에서 제약을 많이 겪고 있으며, 관광종사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메뉴얼과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단기 17가지 전략과제를 제안하였음. 또한 실태조사와 해외사례분석 등 연구를 통해 한국 장애인 관광의 방향을 [누구나 행복한 관광환경 구축(Tour for All)]으로 선정. 즉, ‘소의 없는 관광을 실현하는 복지관광과 함께 실버관광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생산적 관광으로 확대하는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장애인 관광의 향후과제

■ 장애인관광 접근성 확보는 ‘모두를 위한 관광투자(Tour for All)’라는 인식필요

특정 집단의 하나인 장애인만을 위한 관광접근성 확보는 재원을 일부에게 집중한다는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음.

하지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노약자를 비롯하여 모든 관광객이 접근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의미함. 장애인관광 접근성 확보는 관광시설, 정보, 서비스 구축의 최종적 완비단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관광은 복지관광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관광투자라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장애인관광 개척을 위한 시장분석과 수용태세가 필요함

한국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마켓을 창출해야 함. 장애인관광과 노인관광(실버관광)을 연계하여 미래마켓으로서 해외시장에 대한 탐색과 분석이 필요함.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안정적 연금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외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장애인은 대안적 관광마켓이 될 수 있음. 특히 이미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한 일본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홍콩, 유럽과 미주 등의 마켓을 분석하고 장애인관광 활성화 전략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해외 새로운 관광마켓 창출 등 생산적 가치와의 결합은 다시 한국의 장애인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민간 관광사업자를 동참시키기 위한 장애인관광시장의 생산적 가치측정

지금까지 장애인관광시장은 복지적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지만 이미 외국의 연구들은 미래관광마켓으로서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민간 관광사업자를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법규의 정비를 통해 강제하는 방법 이외에 장애인관광 자체의 잠재성과 생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와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관광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확보는 고령화 사회의 ‘실버관광마켓’을 확보하는 전략과 일치하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 유치를 촉진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생산적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요구됨.

이와 함께 민간관광 시설에서 장애인관광의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확보가 미치는 사회적 홍보마케팅 효과를 측정하여 민간 관광사업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관광을 위한 사회적 협력시스템 필요

관광은 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의 산물임. 따라서 관광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 환경이 장애인을 위해 갖추어져야만 관광활동도 촉진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본 사업의 한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거리 대중교통과 지역 내 대중교통을 통해 장애인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등 관광환경 이외에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일반적 법률 정비와 시행이 이루어져야만 관광을 포함한 일반적 환경이 구비될 수 있음.

장애인관광은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장애인관광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제반 영역의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또한 국가기관, 시민단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함.



장애인관광과 여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용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관광과 여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웅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관광과 여행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층의 관광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가족 나들이와 가족문화의 변화는 가족여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장애인들도 여행과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와 노인 및 장애인들의 관심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애인 및 노인의 관광과 여행을 위한 인프라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애인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관광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은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요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각광받는 선진국의 관광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과 노인이 관광하기에 편리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관광지 자체도 장애인이나 노인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광지의 상가에 대한 접근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 도로의 정비를 통해서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들도 자유롭게 보행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저상버스,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택시 등의 보급을 통해 관광지 내에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만약 관광지내에 순환버스나 열차 등의 관광용 교통수단이 있다면,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휠체어 사용자등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장애인의 여행과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도로에서 주변 상가의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가의 턱이나 계단을 제거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용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이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 음식점이나 주요 시설에는 모두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테이블과 의자로 되어 있는 음식점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이 많으며, 이러한 음식점은 아무리 맛있

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광지의 음식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방으로 만들더라도 일부는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관광지 안내지도에 휠체어 사용자가 갈 수 있는 루트를 표시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2. 숙박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

숙박시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여행은 하루 여행으로 단축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이동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동에 불편함을 느껴 하루 여행보다는 1박2일 여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숙박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급호텔 등 고급호텔에만 장애인용 객실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 지어진 모텔 등의 접근이 훨씬 쉽지만, 모텔의 운영시스템과 이미지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텔의 특성상 레스토랑이 없어 식사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고급호텔 뿐 아니라 모든 숙박시설에 장애인용 객실을 설치할 뿐 아니라 모든 객실의 턱을 없애고 문 폭을 넓히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 그리고 호텔 협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3. 관광지까지의 교통수단 등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해 한국관광공사에서 펴낸 “희망여행”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정부 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여행 안내책자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여행책자의 아쉬움이 있다면, 관광지까지의 이동에 대한 정보는 담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가장 쉽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기차이다. 따라서 기차를 통해서 여행을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곳을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는 새마을호를 이용할 수 없다. KTX의 경우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노선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주요 관광코스의 경우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비치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미국의 그랜드캐년을 여행할 때,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통해 이동을 했었다.

4.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개의 시설과 건물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의 경우 개개의 시설이 아닌

공간이나 구역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개의 시설물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아닌 관광지라는 공간이나 구역 차원에서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궁이나 능,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유산의 경우 단순히 편의시설의 설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재이기에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주장하며,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 설치를 반대해서도 안 되며, 장애인등의 편의만을 주장하며 편의시설의 설치만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장애인 등 당사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과 관광지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최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웹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관광지의 웹사이트에는 장애인의 접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로도 제공하여 외국의 장애인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외국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한국어 접근하고 이동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6. 장애인 관광 안내 책자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2001년에 『서울 가고 싶은 곳 99곳』, 2005년에 『서울의 호텔과 레스토랑』, 200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관광지 및 숙박시설 안내-우리도 간다』 등을 펴냈다. 특히 『우리도 간다』의 경우 영문판과 일본어판도 함께 펴냈으며, 이 책들은 외국으로부터 지금도 계속 요청이 들어올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 부족으로 개정판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자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관광 및 여행을 뒷받침 해주는 가장 큰 정보이며, 외국의 장애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7. 장애인 관광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관광에 대한 안내와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여행이나 관광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부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에서 장애인관광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안내전화 1666-4560을 개설하여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다양한 장애인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행사에서 다양한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하루코스에서부터 2박3일, 3박4일 코스 등이 있어야 하고, 혼자 가는 장애인이나 가족과 함께 가는 장애인을 위한 여행 코스 등도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 여행을 위한 코스 뿐 아니라 해외 여행을 위한 코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코스와 장애인을 위한 코스도 개발되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코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 관광 중심의 프로그램만 개발되고 있지만, 이제는 개인 여행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9. 여행사들도 장애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행사들은 장애인과 노인을 주요 고객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준비는 차량에 대한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행사의 관광버스 가운데 적어도 1대 이상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를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여행을 신청할 때, 이 버스를 우선 배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0. 관광관련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숙박시설, 관광지, 음식점, 관광안내원, 여행사 등 관광관련 종사원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종사원 가운데 장애인 여행객을 맞이하는 에티켓을 교육받거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종사원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관련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고객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아직 개별 여행사들이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 여행 안내책자의 발행,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은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는다. 또한 관광지의 접근성 개선, 종사자 교육도 역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최근 각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관광은 관광산업이라는 면에서도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관광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장애인 및 노인 관광에 힘을 모을 때이다.